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오후 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준비팀

후원 (재)인권재단 사람

I. 서론

3

-
- 1. 사건 개괄
 - 2. 보고서의 목적
 - 3. 보고서의 내용
 - 4. 함께한 사람들
 - 5. 보고서 작성기간

II. 본론

9

압수수색과정의 인권침해

“새벽 여섯시 반, 둘째 아이 이름을 대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물밀 듯이 들어왔다”

- 1.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 11
-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24
-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59
- 2. 질리지 않는 ‘종북’논쟁 68
-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72

생활상의 변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범죄가 되었다”

1. 일상 생활의 변화	79
2. 경제적 어려움	87
3. 직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91
4. 대인관계의 변화	93

III. 결론 97

1. 들어가며	98
2. 결론에 끼워 맞춘 각본 수사	100
3. 그에 따른 인권침해	101
4. 제언	104

IV. 건강권 105

V. 보론 109

참고자료

1. 내란음모 사건경과	115
2. 회차별 재판경과	116
3. 편지	131

보고회 순서

1.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
2. 인권침해 보고대회 : 랑(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3. 피해자 건강상태 및 건강권에 대한 짧은 의견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I. 서론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1. 사건 개괄

2013년 8월 28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당일 오전만 하더라도 파장이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혼한 국가보안법도 아니었다.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 만이었다. 사건 당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치 쟁점화되던 시기였기에 국정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내란음모’의 실체라고 드러난 ‘RO(아르오)’와 국정원 조력자에 의해 공개된 녹취파일(녹취파일은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오기가 있었음이 드러났다)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내란음모’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7명이 구속되었고 16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후 불구속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10여 명이 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여럿이다. 대부분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 4개의 압수수색영장이 세트로 발부되어 집행되었고,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관련자 등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8월 28일 사건 당일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11월 14일까지 수 차례 더 이어졌다.

불과 4-5명이 사는 25평 가택에 들이닥친 국정원 직원 등 수사관이 40여명을 넘었다. 혐의가 인정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죄는 이미 확정되어 대다수 언론과 심지어 동지적 관계를 맺었던 진보진영에서도 외면당했다.

검찰은 정예화된 지하혁명 조직 ‘RO’,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 결의 대회’ 통해 사전 결의, 5.10 및 5.12를 통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및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재판은 2013년 11월 12일 시작되어 2014년 2월 3일까지 45차례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상호·김근래·홍순석·조양원·김홍렬에게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에게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험하다’ ‘RO가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격리시켜야 한다’, ‘RO가 북한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대남 혁명노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

1) 1980년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주모자로 지목하고, 재야인사 20여 명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金大中 内亂陰謀事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며, 검찰이 내란음모의 핵심주체로 지목한 RO 자체도 실체적 객관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 보고서의 목적

“공안탄압이라는 언어로 읽을 수 없는 고통의 얼굴을 들춰내야 한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출발로 전 사회가 공안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국정원에서 시작된 공포정치가 박근혜 정권 내내 공안 통치를 진두지휘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공안사건의 첫 문을 연 것과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권침해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공안사건, 공안통치, 공안탄압 등 비인격적 언어로 읽힐 수 없는 고통받는 얼굴을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아픔을 통해 공포정치가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마녀사냥의 피해를 온 몸으로 당한 가족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조차 사건관련 가족과 피해자를 인터뷰하러 갈 때까지 몰랐다. 신념과 확신에 가득찬 사람들�이니, 그런대로 잘 이겨나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고 우리의 예측이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건이 시작되고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잘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그날 이후 “숨 쉬는 것조차 범죄가 되었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정작 우리마저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보고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아픔도 같이 담았다.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목소리 속에서 인권운동의 역할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우리가 느낀 만큼의 것을 정직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은 박탈당할 수 없다는 인권의 원칙을 되새기며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3. 보고서의 내용

이 보고서는 I. 서론에서 인권침해 보고서의 개괄적 설명을 한다. II. 본론에서는 피해자 가족 6명, 압수수색 당사자 11명, 5월 정세강연회 참석자 6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과 재판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설명한다. III. 결론에서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할 것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안탄압이라는 비인격적 언어 뒤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맨 얼굴을 보고, 국정원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도 유사한 피해자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강력한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참고자료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가 정리한 ‘사건경과’, ‘재판 진행과정 요약본’, ‘구속자 김근래씨의 아들 동주군의 편지’를 담았다.

4. 함께 한 사람들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연설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 김희진, 윤지현, 희망, 이은나래, 랑, 유성, 이경빈, 정민수, 이해정, 현정, 박천우, 형석, 선영, 은아, 김산, 오렌지가 좋아, 박진, 이상윤

5. 보고서 작성 기간

▣ 2013년 11월 12일 인권침해 보고회 준비팀 구성

국가 주도 하에 벌어지는 일련의 공안탄압 사건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모임 결성. 그 중에서도 공안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가족 심층 인터뷰 작업>을 계획함.

▣ 2013년 12월 23일 가칭 <내란음모 사건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1차 회의

프로젝트 기획 및 설문 초안 작성

■ 2013년 12월 28일 가칭 <내란음모 사건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2차 회의

인터뷰 대상자 확정

총 25명의 인터뷰 대상자/ 14명의 활동가로 8개 인터뷰 팀 구성

인터뷰 대상자는 '구속자 가족', '압수수색 당사자', '5월 정세 강연회 참석자'로 분류해 구성

■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인터뷰 진행

서울과 경기도 수원, 화성, 안양, 평택 등지

■ 2014년 1월 15일 <내란음모 사건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

보고서 제목 확정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가칭)

두 개의 기조 결정: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 일상이 범죄가 되었다'

보고서 내용을 총 7개의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별 작성자 구성

①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②조사과정의 인권침해

③가정·직장·생계 등 생활상의 변화

④사회적 발언 기회의 배제

⑤사건 후 트라우마

⑥수감자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통의 틀과 유의점 합의

■ 2014년 1월 16일부터 2014년 1월 27일

녹취록 전체 완성 및 최종 취합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내용 확인 및 수정 작업

보고서 작성 시작

■ 2014년 1월 28일

보고서 초안 점검 1차 회의

보고서 및 보고대회 제목 확정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카테고리별 내용 및 구성 점검

■ 2014년 2월 4일 보고서 초안 점검 2차 회의

초안 완성된 파트 내용 점검

카테고리별 소제목 확정

보고대회 준비 논의(시간, 장소, 발표자, 홍보 방법 등)

보고대회 2월 12일(수) 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확정

■ 2014년 2월 7일

1차 편집본 완성

웹자보 제작 및 홍보

■ 2014년 2월 12일

보고회

III. 본론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새벽 여섯시 반, 둘째 아이 이름을 대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물밀 듯이 들어왔다.”

압수수색은 5차례에 걸쳐 집, 차량, 회사,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8월 30일 추가로 1명이 더 압수수색을 당했다. 추석 연휴 전날이었던 9월 17일에는 5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9월 24일에는 배우자를 압수수색 한다는 명목으로, 이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집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는 씨앤크뮤니케이션즈, 사회동향연구소 등 8개 업체와 관련자 7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은 보통 일출시간인 새벽 6시 30분 경에 이루어졌다. 국정원임을 숨기고 이웃의 일상적인 방문 등을 가장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압수수색 대상자나 가족이 문을 열어주면 곧바로 많은 수(대략 10명에서 40명 가량)의 국정원 직원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식이었다. 반나절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도 몇몇 있었지만, 야간 영장까지 발부되어 새벽 3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수의 경찰 차량과 전경 차를 대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언론을 대동해 압수수색 대상자나 가족들의 신상이 노출되기도, 했고 아직 증거물로 채택 되지 않은 압수 물들이 ‘내란음모’의 증거처럼 과장 왜곡되어 보도되기도 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인위적 소란이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량 통제도 이웃들에게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하기도 했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비해 압수된 물품 중 직접적으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재판에서 압수물 다수가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다. 압수수색 피해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압수물은 교도소 수감시절의 일기와 같이 사적인 기록이었다. 특히 국정원은 휴대폰, USB, SD카드, 노트북 같은 전자 장비에 주목했고 혐의와 전혀 관계없는 파일들까지 전부 복사하거나 장비 자체를 압수하기도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서적이나

노래집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정당의 공식 간행물 같이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기업 업무에 관련된 기록들도 압수되었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

압수수색 대상자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허위로 영장을 고지하는가 하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이 따르지 않았다. 이른 새벽 고립된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참관권마저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았으니, 이는 압수수색이라기보다 주거침입의 성격이 같다. 하물며 수사관들은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물품, 공소 사실과 무관한 물품까지 마구잡이로 압수했다. 한마디로 다 털어서 뭐든 건져 보겠다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었다.

압수수색은 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미리 참관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²⁾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그 역시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지, 수사기관 마음대로 사전통지 의무를 형해화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압수수색은 모두 새벽 6시 반 경, 차를 빼달라는 등의 허위 고지와 함께 기습적으로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 명의 낯선 이들에게 사적인 주거 공간이 임의로 침범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관행이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설령 그런 기습성이 용인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압수수색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최소 침해 원칙은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영장 제시의 의무나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참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게 한다거나 부당한 압수 수색에도 얌전히 구경만 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아무 문제도 없었음을 보증해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수사기관과 그에 소속된 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권리들이

2) (형사소송법 제121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 나타난 국정원 수사 요원들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었다. 심지어는 변호사의 정당한 제지마저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가며 협박한 사례마저 있었다.

의문은 이렇게까지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쳐 국정원이 확보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내란음모 사건이라면서 고작 사전과 우표, 악보와 음악 CD와 같은 물건들을 압수해 가는 사례들을 보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 허위 고지로 시작한 압수수색

거의 모든 사례에서 압수수색은 문을 열기 위한 허위 고지와 함께 시작되었다. 차를 빼달라거나 옆집인데 물이 샌다거나 하는 단순한 거짓말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자녀의 일로 경찰서에서 왔다는 식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압수수색이 새벽에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는 커녕 미처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다수의 남성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것에서 위압감을 넘어 신변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1〉

7시 조금 안된 시간이었어요. 송파경찰서에서 000(둘째 아들) 학생 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아주 많은 거예요. 8월 28일이면 아직 더울 때라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었어요. (중략) “옷을 다시 입고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좀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중략) 나가시라고.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그랬어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2〉

8월 28일 새벽 6시 (중략)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삿짐이 들어오니 차를 빼달라고. 차를 빼야 하

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생각했고 남편에게 차 빼려 나가라고 시켰어요. 남편이 문을 여는 순간 10여 명이 되는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친 거죠. (중략)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나?” (했더니) 자기들은 원래 그런다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요. 집도 큰 집이 아닌데 아수라장이 된 거죠.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3〉

아침 여섯시쯤이었죠. 다들 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집사람이 교사인데, 학부모라고 해 가지고 급히 뭐 얘기 할 게 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뚱딴지 같은 일이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중략) 우르르 몰려온 상황 자체가 위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석용/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압수수색이 새벽 여섯 시 반에 들어왔고, 저는 혼자 살아요. (중략) 옆집이 주인집이에요. (중략) 아랫집에서 물이 샰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주인집이 밑에서 물이 샰다고 하니까 문을 열었는데, 열 다섯 명 정도 되는 수사관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제가 그 때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때라, 속옷을 안 입은 잠옷 바람 상태였어요. 잠옷은 짧았고요. 그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남자 수사관들이 뛰어 들어온 거죠. ‘국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 제가 방문을 잠그려고 해서 몸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싶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방 안에 열 다섯 명이 뛰어 들어왔죠. 여자가 세 명 있었고, 나머지는 저랑 남자 수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속옷 바람이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2) 영장의 형식적 제시와 혐의 사실에 대한 설명 부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앞서 영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범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그 범위에서 벗어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상 영장을

제시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사실 영장의 내용, 즉 압수수색의 목적과 대상, 범위에 대해 상대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요원들은 단순히 영장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거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1〉

밀고 들어올 당시 여직원들이 영장도 없고 변호사도 없다고 항의했는데, 밀치고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6시 반에 밀고 들어왔는데, 일출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온 거 같아요. 저희가 7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영장이 있다고 말하고 문을 부수는데 정신은 없었지만 30분 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영장을 보여 달라하자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실랑이가 2시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밀고 들어와 구역을 정해서 누구는 어디 하고 어디 한다는 등 짜고 들어온 거죠.

(박지현/씨앤커뮤니케이션즈/압수수색 당사자)

〈사례2〉

압수수색 영장을 봤어요. 변호사님하고 봤는데. 일명 거기에 보면 ‘산악회’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중략) ‘RO’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RO가 뭐냐 RO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RO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Revolution이나 Real이냐 뭐냐” 했더니. “아 빨리 넘어가라.”고 신경질을 확 내는 거에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3〉

남편과 둘 다 무슨 일인지,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 그래서 보니, 듣도 보도 못한 내란, 인명 살상, 총기 무장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우리 집에는 아이 장난감 총조차 없다고,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남편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중략) 그 영장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통범칙금이 나올 때도 적어도 사진이라도 같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게 오면서 설명조차 없는지 설명을 부탁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남편이 안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에요. 저는 남편이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A/구속자 가족)

3) 고립 상황에서 압수수색 진행

거의 모든 압수수색 대상자는 압수수색을 인지하자마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고 국정원 수사관들에게는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수사관들이 주거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1〉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조력을 받는 조건에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사실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내가 수색하는 걸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아뇨. 체포영장 떨어진 건 아니고 그때 압수수색 영장만 떨어진 거라,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기다려 주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되었구요.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3〉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제시했고, 저는 영장 고지를 거부했죠. 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 변호인이 온 다음에 시작해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인이 없어도 아무 상관 없다고. 심지어는 저도 없어도 되더라고요. (중략) 법적으로 변호인이 없어도 상관 없다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법을 들이대는 순간 지식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들은 법을 들이대는데 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럴 때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다 못 해 영장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단지 변호사 없이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것을 넘어, 애초에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도 존재했다.

〈사례〉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핸드폰을 빼았았어요. 6시 30분에 들어왔는데 8시 30분 정도까지 아무도 주변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받는 걸 모르고 있었죠. 8시 지나면서부터 제가 변호사를 요구했어요. 저랑 같이 살았던 후배가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나 봐요. (중략) 그래서 8시 20분쯤 저를 찾아와서 제가 압수수색 당하는 걸 당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고 (중략) 상황 자체가 알려진 것이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조력을 위해 찾아온 지인들을 만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한이다.

〈사례1〉

계속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를 구금한 건 아니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한다든지 한 게 심했었고. 밖에 사람들, 당원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중략) 저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계속 나가려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나가게 해주겠다.” 이런 제약 같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지인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만날 수는 있는데 집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집은 4층인데 3층까지만 올라올 수 있어서, 지인들이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내려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만 이야기했어요. “수사에 협조해라. 그래야 압수수색이 빨리 끝난다.”라고 했어요. 비협조적이어서 압수수색이 길어진다는 이야기, 변호사를 불러 봐야 다를 거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죠.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4) 참관권의 무력화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대부분 현장에 참관할 수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압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³⁾

〈사례1〉

다 꼼꼼하게 보진 못했죠. 왜냐면 한 무리는 컴퓨터를 복제한다고 하고 있었고, 한 무리는 안방 작은방 금속 탐지기로 뒤지고 있고 남편은 거실에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옷이나 서랍 속 뒤지니까 그쪽에 가 있었고 일부 컴퓨터 만지고 있는 쪽은 못봤죠.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저는 이것과 내란음모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설득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기 서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거냐”하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압수수색 참관을 하고 있는 건데… 참관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장에 들고 온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방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김진실/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압수수색 당사자)

압수수색 대상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압하는 태도는, 압수물품을 확인하고 목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진다.

〈사례〉

압수물품과 목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서명을 먼저 하고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냐?” 항의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먼저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3) 그 외에 이OO, 김OO가 거주하거나 거주한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장소의 경우, 타인이 관리하는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임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지 않고 파출소 경찰관만을 참여케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1심 재판부에서 절차 위반을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없이 퇴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록 수령을 하는 절차가 남았어요. 어쨌든 물품과 목록을 대조하지는 못했지만 목록은 수령을 해야 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다 목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인을 안 하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받는 것과 사인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 먼저 목록을 받아야 사인을 하든 말든 결정할 거 아니냐.” 하니 사인을 안 하면 물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김진실/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압수수색당사자)

형사소송절차에서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 신뢰관계 대리인에게 압수품 목록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기구가 의도적으로 증거물이나 압수품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오류나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국정원 수사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확인해야 서명하겠다는 방어적 권리를 한사코 부인하며, 거꾸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해야 확인하게 해주겠다는 입장을 시종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민을 상대하는 수사 기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면 항복과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점령군 태도에 가깝다.

5) 압수수색 대상자의 법적 권리가 훼손된 사례들

(1)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실력으로 강행되면서, 실제로 영장의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들이 무시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변호인의 정당한 제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며 협박 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1〉

그들 맘대로 온 집안을 엎었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들도 많았죠. 이를테면 컴퓨터를 압수하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갈 수 없고, 하드내용을 보면서 한글파일이 열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압수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복사가 가능한데, 처음에 아마 제 방에 있던 USB 등의 저장매체를 그냥 다 통째로 복사했죠. 그에

대해서 제가 고지를 받든 안 받든 설명 자체도 없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통보도 없었죠. 나중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물어보는데 그 전에 것을 파기하지를 않더라고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우리 집에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걸 수사 기관에 가져가는 건 본래 안 된다고 해요. 복사를 하던가 파일을 옮기던가 해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 동의할 수 없으니까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3일이 걸린 적도 있다고 하면서 그럼 3일을 여기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나도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3일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하고 가시라고 했어요. 가져가면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결국엔 가져갔어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3〉

예전에 쓰던 핸드폰들을 안 팔고 놔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었는데 그걸 포렌식 하겠다고, 처음엔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영장에도 가져간다는 것은 없지 않나”고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중략) 변호사 님이 “국정원에서 기술부족 아니냐, 압수 할 이유가 없다. 왜 기계를 압수해 가는지 내용을 녹음하겠다.”라고 하시고 변호사님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 기계를 압수 수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수사관이 (지휘자 같았어요.) “입다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수사관들한테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군포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을 요청했어요.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달라. 이 사람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했고, 변호사님은 “정당한 변호권이다.”라고 해서 싸우고.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특히 국정원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PC 등 전자기기와 이에 담긴 전자정보의 압수에 주력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인데, 이러한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 복사, 복호화하는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압수수색의 집행은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⁴⁾이다. 그럼에도 사례 1에서와 같이 위법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현재 1심 재판부도 이런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물건까지 압수해간 뒤,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형식적인 2차 압수수색을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사례1〉

1차 압수수색 때 원래 영장에는 남편 이영춘 것만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제 물건 까지 가져갔어요. 사실상 하나의 영장을 갖고 두 명을 털은 거죠. (중략) 너무 어처구니없는 게 나중에 역으로 압수수색을 또 한 번 온 거예요. 형식적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 전에 가져간 걸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채택하겠단다. 종전 압수물을 이번에 채택하는데 서명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 서명은 안했지만. 그거 가져간 걸 이용하기 위해 또 한 번 압수수색 들어온 거예요.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2)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품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가져간 물품들 중에는 내란음모라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측의 절차상 실수로 사무실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가자, 보복성으로 2차로 다시 주거지를 압수수색, 티셔츠 한장을 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⁵⁾

〈사례1〉

문을 뚫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니까 바로 핸드폰부터 압수하고 시작하더라고요. 6시 반에 들어온 후 저녁 6시 다 돼서 갔어요. 민중가요 노래책,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봤던 책이에

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의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의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

5) 8월 28일 우OO보좌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압수물에 대한 봉인 조취가 취해지지 않아 압수물이 0점이 되었다. 8월 30일 우씨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며 티셔츠 1장이 압수되었다.

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어디서 조사를 나오면 저건 가져가겠구나 생각했던 책이에요. 예외 없이 <혁명의 역사> 가져가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했을 것 같아요. 그 책들 봤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비디오 테이프. 나중에 국정원 조사 때 보니까 그게 예전에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녹화본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애들 핸드폰 해주려고 했던 핸드폰들… 핸드폰이란 핸드폰은 싹 가져갔더라고요. 또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썼던 일기. 그걸 읽더니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컴퓨터랑 이런 거, 아들이 쓰고 있는 영화 다운 받은 거, 애들 핸드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거 뜨고. 문건 3~4 개. 1990 후반 2000 초반 이때쯤 어디 강연갔다 받아온 교육자료들이에요. 노동운동의. 저희 남편이 삼성전자 1호 해고자인데 노동조합만들려고 그러다가 삼성에서 해고된 사람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한국 노동운동 역사.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나오니 뒤집어져서 사진 찍고 난리… 이런 문건 몇 개 가져갔어요. 파일 사이에 방치된 그런 거, 받아온 이후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일단 저희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당했잖아요. 사실 회사 물품의 절반이 압수된 거예요. 사회동향연구소도 1년에 3번이나 당하니까, 다 가져가요.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압수해갔거든요.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가요. 제 책상만 여섯번을 뒤졌잖아요. 검사가 뒤지고 국정원이 같이 와서 뒤지고 여섯 번째는 뒤지다 수색할 게 없으니 심지어 순천에서 가지고 갔던 걸 다시 가져가고 했어요. 황당한 일이죠.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웃긴 거다. 검찰에서 가지고 간 걸 또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말했죠. 코메디 같은 거죠.

(박지현/씨엔커뮤니케이션즈/압수수색당사자)

〈사례4〉

예를 들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의 공식자료집 이런 걸 왜 가져갑니까?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지도 않고. 교보문고에서도 살 수 있는 책들을 왜 압수를 해서. 전 전혀 이해가 안되요. 시중에서 팔리는 거면 그 책의 제목만 적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개인물품을 가져가죠?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개인적으로 전 그 노래 CD를 돌려받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 돌려받겠어요. 요새는 절판된 CD거든요. 아마 안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받아가지 않으면 다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적인 것을 압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 검토하죠.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모멸감을 느끼죠. 일기장 같은 것을 집안에 늘어놓고 4, 5명이 보는데 그 자체가 불쾌했죠. 편지함. 사적인 걸 4, 5명이 두련두련하면서 다 보는 거죠. 본다는 자체가 참. 이런 것들은 딴 곳에 둬야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는 못 보겠어요. 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예요. 없앨 순 없지만 그들에게 다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건과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물품도 압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례1〉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예전에 공부했던 <조선말 사전>이 있는데 동광 출판사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뭐. 이거 내꺼다. 분명히 자기네가 저희 남편이나 저를 20년 넘게 사찰을 했는데. 제가 월 공부했는지도 알 수 있을 테고. 그랬을 거잖아요. 월 사갖고 들고가는지도 다 알 텐데. 그랬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동광출판사가 국내 출판산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략) 남북교류하면서 저희 남편이 갖다 오면서 가져온. 그때 송환되셨던 분들, 그 우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송환되셨던 분들 우표에는 저희 성남에서도 송환되신 분이 계셨어요. 김영 선생님인가 그 분이. 여기서 환송식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 이름이 있으시니까 기념으로 갖고 온 거 같애요. 그분들이 잘 계시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에서 우표 한장이 나온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거 문건이라고 불온문건이라고. 자기네가 가져가면서도 그게 우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정신없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문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2〉

그래서 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별거 아닌데 지역아동센터 엄마들이 6.15 행사 때 상금 타려고 공연을 했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거기서 상 받았는데 차에 방치해 놓은 게 있었는데 상장에 6.15 써있으니깐. 객들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들끼리 정사~정사~이러면서 사진찍는 사람인데 사진을 심도 있게 찍는 전문가가 있나봐요. 그 사람을 부르면 가서 첨보영화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서는 한 두 장도 아니고 바바바박 찍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들 응원한다고 피켓을 만들었는데 '진격의 엄마들'이라는 플랭카드 보고도 이것도 전쟁용어인 거예요. 이거 보고 뒤집어져서 난리쳐 가지고.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부엌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의 공간이잖아요. 부엌을 뒤지다가 국정원 기념품이 하나 나왔어요. 수저세트. 어머님이 예전에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견학을 가셨다가 받은 것 같은데 탄성과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물품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염탐하러갔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래서 뭔가 했어요. 어머님이 그거 내가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다시 갖다 놓더라고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과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및 개연성을 미리 확보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이미 확인된 사실들로부터 추론 가능한 합리적 개연성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수색이나 체포 등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뭔가 나오면 조립해보겠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압수수색의 범위는 모호하고 넓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압수수색 대상자가 경험하는 프라이버시 손상과 기본권 침해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라는 엄청난 혐의를 공표하며 공개수사와 압수수색에 돌입할 정도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대상과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략의 구상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겠다며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주방에서 수저세트를 발견하고 쾌재를 부르는 모습은, 어찌면 수사팀 내부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그동안 국정원이 무엇을 사찰해왔던 건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벽부터 국정원이라는 비밀경찰 기구의 위압적인 방문을 받았던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가장 내밀한 개인적 기록까지 모조리 열어보여야 했던 자신들의 무력했던 대응을 상처로 새기며 한탄스러워하고 있었다.

〈사례1〉

국정원이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뭔가 제가 더 거칠게 항의하지 못한 것이 제일 억울해요. 국정원이라는 사람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경찰이면 경찰은 많이 접하잖아요. 국정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될 것 같은 자기검열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좀 더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그런 게 속상해요. 경찰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때 따질 수 있는데, 국정원에는 무시무시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못 따지고, 그 다음에 항의하는 것을 거칠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의사표현 정도만 했죠. 그것도 속상해요. 나중에 보니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더라구요. (윤경선/지역 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강연 참석자)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찾기 위해 특정 장소나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들은 마치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모든 권리가 박탈된 대역 죄인처럼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이나 접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다. 수사관들 중에는 공공연히 우월감을 표출하며 압수수색 대상자를 조롱하는 사례도 보인다.

1) 기본권에 대한 존중 부재

〈사례1〉

그리고 안방에 남편이 문을 잠그고 잤으니까 안방 문을 밸로 차고, 문틀을 부수고, (신발 신은 채로)… 남편을 거실로 끌어냈어요. 순식간에 들어온 일이고 잠결이라 얼떨떨한 거죠. 어 할 사이도 없이 10여명이 들어왔어요. 바로 뛰어왔으니 신발 안 벗었겠죠. (선생님을 밀치고 들어왔나요?) 밀었죠. 아파트 현관이 열리는 틈에 저를 확 잡아 낚아채면서 저를 밀면서 들어온 거죠. 남편은 속옷 차림이었고, 저도 여름 원피스에 상의 속옷은 안 입고. 속옷차림으로 끌려나온거죠. (체포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떨어진 건 아니고 그때 압수수색 영장만 떨어진 거라.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기본적인 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예를 들어 옷 문제나 몸수색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이 분명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의심하면서 주민번호로 신원확인을 하고 전화를 바꿔줬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요. 변호사는 변호사 번호를 대라고 했어요. (중략) 그 때 제가 직장을 새로 들어가서 출근을 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자기들이 저 대신 제 직장에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아파서 못 간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주민번호를 대라고 하면 직장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었고, 그 과정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못 누린 거죠. 화장실 갈 때 마다 쫓아오고, 여자 수사관이 붙고. 그런 과정이 짜증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이석기 의원실에 있었는데 국정원수사관은 첨 봤는데, 이건 경찰과는 달랐어요. 인권수사는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오자마자 이건 범죄인이 아니라 적을 대하는 것처럼 욕도 나오고 얘들은 뭔가 싶더라고요. 경찰에서 는 아무리 다급해도, 제압을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흉악범이 아니면, 일반인을 대하다 보니까, 법적 내에서 따지는데, 여긴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으로 아린다고 해야 하나요. 말도 반말은 기본이고 어쨌든 우왕좌왕하고 여렷이 뭉쳐있으니까, 이 새끼 이러더라고요. 첨에 당황했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밑으로

발이 날아오고 아주 황당했죠. 일반 피해자가 아니라 무슨 간첩을 대하는 거 같은 개념들 입장에서는 간첩이 주적이잖아요. 거의 그런 걸 대하는 거 같은… 살기랄까 사람 대하는 것 자체도 그렇더라고요. 반말은 기본이고 말도 안 높이고 다른 고지도 없고 변호사 없으면 당하겠더라고요.(중략) 끔찍한 경험을 한번 했죠.

(C/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여성들의 경우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거나 낯선 수사관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영장에 적힌 피의자 아닌 가족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유치장이나 감옥에서 조차 옷을 갈아입을 때,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금시설 업무수칙이다.

〈사례1〉

제가 옷을 입겠다는 요구했지만 옷을 못 갈아입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수사관이 영장을 읽었고, 영장에 사인을 해야 옷을 갈아입게 해 주겠다고 해서 실랑이를 했어요.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영장을 듣고, 영장을 받아 사인을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허락을 받았죠. (중략) 내려와서 사람들도 접촉 못하게 하고요. 그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여성 혼자여서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옷을 입겠다고 해도 어떤 여자 분이 따라 들어오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국정원 여자 직원이었어요. 자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옷 입는데 봐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 들어가야 한다고 그 말만. 그래서 제가 차마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서 제가 윗도리만 하나 더 입었어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일단 옷부터 갈아입겠다고 했더니, 여직원 두 명이 따라서 들어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누가 있는 곳에서 갈아입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겠다고 했더니 압수수색이 안 끝나서 화장실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장 차림이고 민망하고 그래서 화장실부터 압수수색 끝내라고 요청하고, 결국 화장실에서 갈아입었다. (A/구속자 가족)

〈사례4〉

남편은 속옷 차림이었고, 저도 여름 원피스에 상의 속옷은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온 거죠. 남편 옷 입으러 들여보내서 옷 입고 왔고 저도 속옷 입으려고 화장실 들어가려니까 여경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피의자도 아닌데.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비인도적인 사례도 발견되었다.

〈사례〉

그 시간에 전화가 와 있어서 느낌이 이상했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집사람하고 작은 애가 많이 놀랐죠. 조그만 동네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몰려다니면 주변 사람들은 놀래죠. 나는 나보다는 집사람이랑 애가… 집도 좁아서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오면 서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애는 옥상 가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될까봐. 국정원 직원들이 애한테 아빠 언제부터 안 들어왔냐, 아빠 차 어디 있느냐, 애가 울고 있는데 탐문수사를 한 거죠. (윤용배/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2) 사찰 사실의 암시와 노골적 조롱

수사 요원들이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그 간의 사찰 사실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사례1〉

국정원이 집에 왔을 때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구나 싶은 게.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건 물론이고. 이름을 어떻게 알지? 모르겠는데, 000씨 이러면서요, 소름끼쳤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역에서 평판이 좋던데 수사에 협조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길. “김홍열 씨 말이 없고 점잖은 편이라고 하시던데.” 뭐 이러면

서. ‘우리 남편에 대해 주변에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차량을 압수수색하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지 사실은 제가 제 차거든요. 저희 남편 차는 이제 회사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얘네들이 사찰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저희 남편이 안타고 다닌 거 아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때때로 조양원씨가 타지 않았나요? 탔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략) 때때로 탔다 이 말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차를 우리를 사찰을 했구나.’ 알게 됐고.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3〉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이러더라고요. “어제는 어디 들어가시대?”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미행을 했다는 걸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증언자들은 한결 같이 소름끼치고 기가 막혀 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압수수색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비밀 경찰의 권능을 은근히 과시하며 상대를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는 행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압수수색 대상자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1〉

나중에는 차량 압수수색을 하겠다면서 키를 달라고 해서 나는 동의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겠다고 했더니 (중략)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고, 그때 변호인도 없었고, 우리가 집회 나가면 해산명령

을 하잖아요? 그걸 빗대서 국정원 직원이 “세 번 고지하면 되죠? 자, 한번, 차량 압수수색합니다! 두 번, 압수수색 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수사 책임자가 제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가깝게 들이대며 “재밌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십분 정도 있다가 변호사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확인을 했어요. 본인들이 찍은 비디오테이프도 있으니 본인이 부인을 못하고, 상황이 너무 딱딱해서 농담한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의 수준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죠.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당연히 저희는 억울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고 국정원 직원들도 여러 종류인데 단순히 압수수색에 동원돼서 물건을 쓸어 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중간 간부도 있고 심리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옆에서 살살 갈구는 거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속 뒤집는 거다. “이거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아 당신이 했던 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죄명에 추가해주겠어’라든지.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지현/씨앤크뮤니케이션즈/압수수색 당사자)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사건 시작부터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언론과 이웃 주민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인격권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수집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자들의 행정적 편의나 단순 부주의, 혹은 무감각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이루어진 행태에 가깝지 않나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명에 대해 최초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8월 28일, 증언자들은 압수수색이 시작됨과 동시에 언론의 동행취재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하여 언론이 긴급하게 대응한 것이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 10여 곳의 장소에서 동시 다발로 시작된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현장취재가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측의 긴밀한 협조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각 현장에는 필요 이상의 수사 인원과 경비 병력이 동원되어 하루 종일 이웃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위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몇몇 증언자들은 국정원 측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사적인 공간에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었다.

또한 압수품의 규모를 과대 포장하거나, 압수품 취사 선택 과정에서 의도적인 누락도 확인되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방북해 찍은 사진들을 압수하면서, 함께 방북했던 국정원 직원과 같이 찍은 사진만 의도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례의 당사자가 국정원에 소환조사 받는 날, 언론은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RO 조직원의 밀입북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법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한 인상과 여론 지형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사적인 생활공간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공간에서 위축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다. 사법 절차로서의 압수수색이, 사실상 정치적 효과를 위한 전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압수수색 과정이 이웃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

처음으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8월 28일, 각 현장에는 압수수색 시작과 거의 동시에 언론의 동행취재가 진행되었다는 다수 증언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사례1〉

그 날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TV조선>에서 왔어요. 당시 두세 명의 당원이 와 있었는데 그 당원들과 말싸움이 있었어요. 아직 언론에도 안 나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국정원이 카메라 장비를 켜면서 들어왔고 SBS 기자들도 왔었어요. 집 앞에서 집안을 찍으려고 해서 같은 동네 사시는 당원이 오셔서 막 싸우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 집을 향해 진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A/구속자 가족)

언론의 밀착 취재는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동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직접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을 언론이나 취재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로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1〉

이OO 대표님 댁에 있을 때도 언론 카메라가 많이 왔는데 언론사와도 엄청 싸웠어요. 못 들어오게. <경향>이나 <한겨레>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종편 쪽에는 취재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이 나와서 나가라고, 보도를 똑바로 할 것도 아니잖냐고. 압수수색하는 거 찍고, 나오는 거 찍으려고. 나중에는 경찰이 “나올 때 얘기해주겠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얼마나 피해가 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크겠어요.

(임미숙/ 정당인/ 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2〉

(수색 하는 과정을) 초기부터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밖에 경찰이 와 있고, 그리고 언론이 집 바로 앞에까지 카메라 가지고 와 있고, 경비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이야기 하고, 동네에 불구경난 듯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말을 한 카메라 기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고, 집 호수도 찍고.

(윤경선/지역 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강연 참가자)

〈사례3〉

그날 저녁에 9시 뉴스에 제가 국정원이 문 열어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까 말했던 그 장면이 나서 입은 상태로 다 맨 얼굴로 해갖고 저희 집이랑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2) 수사 인원과 경비 병력의 과도한 동원

압수수색 대상자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과 골목, 아파트에는 수사 인원과 경비 병력이 보통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배치되어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언론보도보다 이웃들에게 각인될 이런 모습들이 더욱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사례1〉

첫 번째 압수수색은 새벽 6시 반에 왔어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 집에 수사관 전문가 포함 40명쯤 들어왔어요. 바깥까지 하면 경찰관 30명 가량, 여자 수사관 1명, 다 합쳐서 100명쯤. 차량은 버스 1대, 국정원 소속 차량 10여 대, 경찰차 5대 가량. 아침에 마을에 유치원 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차로 막아서 주민들 항의도 엄청 많았어요.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밖을 내다 봤는데, 진짜 새까만 차량이 몇십 대 와 있었고, (중략) 2차 때는 압수 수색 영장이 집사람 거였는데 이미 1차 때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가고, 2차 때는 그때보다 많은 병력을 끌고 와서는 압수수색도 안 했대요, 1차 때 가져간 그 필름만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온 아파트가 공포 분위기에 빠져서 우리 옆집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오기가 겁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저희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 그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오니깐 들어오는 과정에 바깥에서 경찰 병력을 2층 올라가는 계단이랑 마당이랑 짹 한 2~30명 정도. 주민 이야기에 의하면 이미 전경차, 보도차량들이 저희 동네에 짹 깔려가지고 주차라인마다 서 있는 거예요. 국회 기자회견 처음 해봤는데 그때 그 큰 카메라는 우리 집 쪽에 대고 그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 났는 줄 안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살꺼니깐. 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한 가족이 사는 그리 크지 않은 집에 20~30명의 수사 인원이 한꺼번에 진입하는 것이나, 주변 골목과 동네에 경비 병력이 대거 배치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 최소한의 공권력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도, 온종일 노출시켜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회 시위에서처럼, 경찰 병력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대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 인원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압수수색을 최대한 노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례마저 있었다.

〈사례 1〉

제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조양원 사장님 때문에 왔는데 안 열면 소리 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우트 하지 마세요. 여기는 저희 집이고, 동네 사람들을 이미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저희 집이기 때문에. 여자 둘 밖에 없다. 여름이어서 저희 옷이 지금 그렇고, 좀 기다려라 했더니.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딱 이렇게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중략) 그리고 2층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집인데도.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두드리시지 말아라.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중략) 계속 밖에서는 저희 집 사찰하고 계속 있고 대기하고 있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여론 몰기 뭐 안좋다 뭐 이런식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동장을 데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동장을 데려왔어요. 저희 동네 OO동인데. 그래서 당신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동네 동장이라 그려는 거예요. 황당해갖고 (웃음) 동장이 올 정도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2〉

되게 웃긴 게요. 일부러 소란스럽게 하더라고요.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리고 이게 되게 살림집이고 짐이 워낙 많거든요. 저희가 두 세 집 살림 합쳐지고 그래서 또 정리 안된 짐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일부는 밖에 있는 거에요. 계단에. 사람들 나와서 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현관 입구에는 기자들도 와 있었다더라구요. 나중에 알았는데. 기자들도 와 있고 경찰차도 와 있고 이랬었어요. 다 들어와서 조용히 압수수색한 건 아니고 밖에 일부러 대기하고 서 있고 계단에 경찰복 입고 앉아 있고… (중략) 그러니까 고층에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보셨겠죠. 저희 어머니가 어수선하게 서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쟁피하다고. 나는 막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막 놀라셔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하튼 그랬었어요.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3) 압수물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수사 요원들이 퇴거하는 시점에 맞춰서 방송국 카메라가 등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때 국정원 측은 사실상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소량인 경우에도, 커다란 상자를 활용하여 내용물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사례1〉

저희 집에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 퇴거를 하는데 MBC가 딱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정원과 언론들은 짜고 있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나가려고 할 때 언론사가 딱 온 거예요. (중략) 국정원 그 박스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쓰레기만 잔뜩 담아요 거기다가. 그 박스가 원래 엄청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썼던 쓰레기 뭐 이런 거 막 넣는 거예요. 고무장갑 같은 거. 저희 집 압수물은 <조선말 사전>하고 우표 한 장 넣고는. 달랑 그거 두 캔 데 들고 나갈 때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2〉

박스 크잖아요. 3개 정도? 종이 한장을 들고 가도 3개 들고 가요. 진짜예요. 안OO 씨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것은 메모지 6개인데 박스 3개 들고 나갔어요. 국정원은 사진 찍히기 좋아하잖아요.

(이재희/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증거물의 중요도가 부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압수물들이 주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압수수색 결과물을 과대 포장하는 행태들은 실제적 진실을 입증하는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가족들의 수치심과 모멸감만 상처로 남았다. 이는 사실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없다.

4) 압수품의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압수품의 규모를 과대 포장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다. 피의자가 방북 당시 찍은 사진들을 압수하면서, 함께 간 국정원 직원과 같이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고의적으로 압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다.

〈사례〉

애기아빠가 낸도는 기억 안 나는데 평양인가 북쪽에 두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인 협력, 사업할 때 그런 일로 갔다 왔고, 한 번은 역사 답사 그런 걸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온 사진들을 쭈욱 늘어 놨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그 사진엔 당신네 직원들도 있다,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당신네 직원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직원 나온 사진들은 빼놓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8월 28일 이후에 뉴스⁶⁾에 애기 아빠가 ‘밀입북’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아니, 예전에 북에 갔다온 거 다 신고하고 온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도 같이 갔잖아.” 그랬더니 “어.” 그래서 “근데 무슨 밀입북이래? 너무 화 가 난다.” 그랬어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6) 〈중앙일보〉, 2013.9.4, RO 조직원 밀입북 가능성, 북 자금 받았는지도 추적.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2514475

위 사례가 언급하는 기사는 9월 4일 증언자의 배우자 김OO씨 등에 대한 국정원의 소환 조사에 앞서 보도된 것으로, 이들의 과거 방북 사실 및 다른 인물들의 방중 사실 등을 거론하며 소위 ‘RO’ 조직원의 밀입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출처가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의 주체인 국정원이다.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다.

수사 기관이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반대 증거를 고의로 배제하는 것은 피의자가 이후 누락된 증거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거나 재판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이 다소 길어질 뿐인 정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압수목록 확인 등 방어권 행사에 대한 방해 등과 맞물리며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할 수 있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등과 결합하면 총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들에서 공권력이 보여준 자의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구조에 앞서 기본권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리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사명을 수시로 무시하며 국민 위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살아왔다.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배후에 공권력 남용이 응크리고 있었던 배경이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하루아침에 공안사범으로 낙인을 찍고 최소한의 반론도 듣기 전에 주홍글씨를 찍어 벼랑으로 내몰 수 있음을 입증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어두컴컴한 조사실로 연행돼 온종일 녹음기처럼 “네 사상이 이런 거 아니냐?”는 취조를 받다 보면 공권력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국정원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번 장에서는 조사과정 인권침해를 기술할 것이다. 편의상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등으로 구분했으나 내용으로 보면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적지 않다.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가 자유권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임에도 별도로 분리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국정원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적, 철학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이다.⁷⁾ 이는 결국 개인의 내면에 속하는 권리로 자유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사상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녹슨 칼이 아니라 언제든 피를 부르는 흉기임을 일깨워주었다.

7) 정희철, 「기본강의 헌법」(개정 6판), 도서출판 여산, 2011, 473쪽

국정원은 이미 소환조사 당사자들을 'RO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소환조사가 대체로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과 내란음모 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내란음모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음모에 대한 실질적 증거 없이 사건을 짜 맞춘데 따른 무원칙한 증거 불충분 수사가 시종일관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무리한 수사는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사상적 의심과 검열, 그리고 그 사상을 인정하라는 자백 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권적 기본권 단락에서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와 인격권 침해에 주목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은 이 사건을 장기간의 미행과 프락치 공작 등으로 터트릴 시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물증은 없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기에 조사과정에서 반인권적 신문 기법들이 동원됐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뒤지는가 하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 및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범죄자처럼 대했다.

적법절차 단락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허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과학수사는 고사하고 세간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증거 수집 및 수사과정은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이 사건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1) 사상 검열

국정원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은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국정원이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범죄의 실체가 아닌 조사 대상자들의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의 질문은 대체로 조사 대상자들의 책, 노래집, 비디오 테이프 같은 소지품, 그리고 이들의 글과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뜬 구름 잡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조사자들이 소지한 책이나 노래의 특정 문구가 곧 이들의 사상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집요하게 시도했다. 피조사자도 자세히 모르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들이대며 “이것이 당신의 사상이다.”라고 강요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사상이 검열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피의자가 해명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였다. 자칫 수사관이 임의로 문제 삼고 있는 사상을 인정할 우려마저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은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사례1〉

우리 집에서 민중가요 노래책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노래 가사를 죽 읽어보니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국정원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황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런 걸로 엮으려 하는 구나. (중략)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있던 책들 – <전쟁론>이나 <혁명의 역사> – 사실 일반적인 책이잖아요? 책에 줄을 쳐 가면서 어떤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사상이다, 이걸 그냥 가지고 있고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당신은 탐독하고 연구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든가. 민중가요 노래가 수백 곡이 있고 그중에 내가 아는 노래도 있고 모르는 노래도 있는데 몇 개 딱 집어서 구절을 가지고 “이게 이적 표현물이고 당신은 이걸 탐독했다.”는 등….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두 번째 조사는 여덟 시간을 받았는데 녹취록을 한 줄씩 읽어줬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녹취록이었는데, “이건 이런 뜻이다. 기억이 나냐. 들어본 바가 있느냐?”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내란을 모의한 거고, 총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차라리 말싸움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억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발언에서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네이버 사전을 찾아와서 죽 읽고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알고 있느냐. 그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다.”라고 했어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있는 사실을 놓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이석기 의원이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뭐냐?” 계속 질문이 이거에요. 그리고 “그 강연이랑 북한 보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계속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생각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페이지 죽 읽어요, 어떤 책자가 있다면. “이석기 발언이 이 책자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면서 죽 읽는 거예요. 20분 이상….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mp3에 노래가 있었거든요. (중략) 일단 노래를 다 틀어줘요. 그 다음에 가사를 다 불러줘요. 한 곡 한 곡 가사를 다 불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아느냐?” (중략) 본인들이 자기들이 조사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중략) 그리고 뭐 책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송두율 교수가 썼던 <역사는 끝났는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압수를 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적 표현물이래요. 그러면서 이적 표현물인 근거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구하고 언제 어디서 구하고,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런 식의 조사를 했던 거죠.

(중략)

작년 초에 전쟁 분위기가 막 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반대를 위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회의나 논의 기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반전평화행동 이런 형태로 해서 안산 지역에 모임을 만든 적 있는데 기획안이 있었어요. 그 기획안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전쟁 반대 내란음모 사건에서 제기한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 6·15선언 이행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북이 제시하는 무슨 대남적화전략 하나의 일환인데 그걸 수행하려 그렇게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못해 그런 반전평화 행동 자체도 얘네들이 이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김석용/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5〉

두 개는 노래 CD였고, 하나는 공CD였죠. 공CD는 저도 모르겠던데 그 두 개는 확실한 게 노동가요 노래였어요. 그 중 하나는 <조국과 청춘>의 음반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에는 <조국과 청춘>이 있으니까, 음반 CD라는 게 확실한 데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CD를 재생하는데 일단 저는 모니터링을 거부했고, 저한테 공증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2) 자백 유도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신문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상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과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 등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⁸⁾

앞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이 있는 증거는 자백뿐이었다. 수사기관은 집요한 신문으로 자백을 듣기 위해 때로는 회유를, 때로는 협박을 시도했다. 회유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거짓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피의 혐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백을 받아내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가 아닌 사람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탈법적 수사행위라 할 것이다.

〈사례1〉

검사가 전화해서는 위로하는 척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남편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
면서 오라고 회유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시기가 한동근 씨한테 검찰이 회유했던 시기였어요. 부인도 회유해서
자백을 유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어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2〉

사건이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담당 검사에게 “지금 볼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막 그러시는 데
“남편 분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점도 보이고 아이도 어린데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 자기가 생각해도 안타깝다.
자기가 따로 편하게 면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시외버스 안이어서 그분이 매우 고마워서 굉장히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간다고 내일 일요일인데 당장 갈 수
있겠냐고 했는데,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한다고 월요일 오전에 가겠다고 이름을 남겨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이야기를 다른 가족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서 다른 가족들은 못 들었고. 저는 다른 가족들한테도
다 온 줄 알았는데, 저한테만 온 거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에게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자백하면 형을

8)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원칙5: 의견의 보장」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권운동사랑방,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data&id=62&page=3&category1=4>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줄여주겠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한 것도 그것 때문일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얼마나 무섭고 절망했는지… 그 후 혹시라도 검사 전화가 또 올까봐 무서웠어요.

(A/구속자 가족)

〈사례3〉

당시 제가 4월 3일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 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너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겠냐?”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하겠냐?”며 계속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사상에 대한 자유뿐 아니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자들은 국정원에 의해 이미 ‘RO 조직원’으로서 ‘사상범’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상범’인 이들은 사생활의 자유도,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도, 심지어 신체의 자유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다. 우리 헌법에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서 도출된다. 이 원칙은 형법상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제한하는 원리로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이는 국가가 국가안보와 같은 자의적인 명분을 이용해 국민의 본질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차단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혐의가 구성되지 않았던 내사 단계부터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고, 조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

1)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때 압수한 물품들로 모자라 조사 대상자들의 개인 통신수단 등에서 사상을 의심할 만한 모든 흔적들을 수집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내란음모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발언들을 잠재적 범죄 혐의로 간주한 것이자, 그 자체로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하겠다.

압수수색 당사자들과 소환조사 대상자들 대부분이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그동안 미행당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수사관들은 심지어 이 같은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며 비아냥대고 조롱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정원 조사 이후 모든 사적인 발언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등 극심한 자기 검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인의 통신수단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사태라 하겠다.

(1) SNS 등 사적 통신기록 감시

SNS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는 소통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국정원은 피조사자들의 SNS 상의 사소한 기록들까지 이적 사상의 증거로 삼고자 했다.

〈사례1〉

저에 대한 SNS, 사생활 다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으니까. SNS에서 생각의 자유가 있으나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 증거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한 100개를. 제가 블로그, 페이스북에 쓴 거, 어디 댓글 남긴 거. 그걸 다 끌어 맞추는 거예요. ‘가상 속의 지하조직 인물과 네가 쓴 글, 네 생각이 동일한 인물이다.’ 모든 제 글을 복사한 게 100개가 넘더라고요.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국정원은 또 제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되게 불쾌했죠. 페이스북이 아주 비밀 공간은 아니지만. (중략)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없고,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눈치를 봐야 할뿐만 아니라 나의 사소한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이게 수사과정에서 묵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 글까지 문제 삼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우리 집에서 가져갔던 감옥에서의 메모, 그건 정말 교도소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사적인 메모였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더라고요.

(최진선/시민단체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조사할 때도 저의 모든 전력을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RO'와 연결 지어서 질문을 해서, 저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2) 일상적 사생활 감시

소환조사 도중에도 사생활 감시는 이어졌다. 주변 인물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는가 하면 화장실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까지 감시했다.

〈사례1〉

저는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안 쓰려고 해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이 다 나오면 이 사람하고 몇 번 통화 했는데 이 사람과 친한가 안 친한가 물어봤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당원 중에 한명이 공기업에 다녀요. 그 친구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어요. “너 공기업에 다니는데 혹시 너 공기업 다닌다고 조사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정말로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를. 그 친구가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를 비롯한 당원들을 조사하러 국정원이 내사를 한 거예요.

〈사례2〉

회사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 사람 중에 B가 있는데 이 사람 지인 중에 정보과 형사가 있는데

그 정보과 형사가 B를 만나면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거기 이영춘이 있느냐?” “그 사람이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라.” B씨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조사는 세 번 받았어요. 세 번째가 압권이었는데 그 전날 제가 혼자서 마음이 안 좋아서 산에 다녀왔어요. 들어가자마자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듯이 “산이 참 좋죠? 산에 자주 다니십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제가 산에 다녀온 걸 모르시니까 “주말에 가끔 간다.”라고 대답 했더니 ”그럼 두 분이 따로따로 다녀오셨나 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들리기로는 ‘네가 산에 다녀온 것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죠. (중략) 저하고 한 분만 침대 방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내곡동에도 침대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로도 한 번 싸웠어요. 상반신 이상이 보이는 통유리 화장실이어서 바깥 것을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들어가 보니 육조가 있었고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 화장실을 쓸 테니 모두 다 나가라.”고 요구해서 싸움을 했어요. 밥 먹는 문제로 싸움도 했고. 안에서 먹으라고 해서 저의 권리는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화장실도 안쪽에 다 보이는 화장실이고 어쨌든 여성 조사관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압박되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5〉

국정원 조사 받을 때인지, 검찰 조사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치소에서 어느 날 독방으로 옮겼나 봐요. 그런데 독방에 CCTV가 달려 있었대요. 남편이 조사를 받는 동안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게 불편하면서도 그냥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있었대요. 볼 일 보는 상황도 감시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담당 교도관을 불러서 불편하다, 이런 방에 꼭 있어야겠느냐 했더니 그제야 바꿔주더래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2) 인격권 침해

인격권이란 헌법 제10조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의 신문은 필연적으로 크든 작든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은 엄격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형식적으로라도 형법상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피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신문 기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혐의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자백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받은 대상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사실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환된 당사자들의 사상을 두고 일반적인 신문 기법을 넘어선 무리한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1) 조롱

뚜렷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조사자를 조롱하며 수치심을 자극했다.

〈사례1〉

감정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들 들어서 ‘당신 나이 먹어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도 하고.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살짝 졸고 있는데 녹취를 작성하시던 분이 대변인 님은 잘 생기셨는데 조는 모습도 참 아름다우시다고. 그래서 제가 번쩍 잠이 깼죠. 얼토당토않은 비아냥이었죠. 이들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교육을 받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부모님 이름, 하시는 일, 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언니만 아무것도 안 하면 평안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2) 비하 및 폭언

〈사례1〉

네 사람이 들어왔고 그 중 두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제일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르면서 의자를 50cm 정도 뒤로 빼서 앉았다는 이유로, “000! 앞으로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B/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신경을 건드리는 대화가 오고 간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있는 다른 분께는 “어따 대고 개기는 거냐.”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제가 시의원인데 계속 편웨하고 “시의원이 대한민국 시의원 맞냐?” 이런 얘기도 하고. “남편하고 둘 다 조사받고 있는데 둘 중 한 명만 돼야 할 거 아니냐. 봐줄 테니까 얘기해라. 둘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이런 회유도 많았어요. 시종일관 인신공격하는 발언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며 “이게 너다.” 이런 거.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부인과 결혼한 것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거 아니냐!” “부인과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혁명)걸 위한 주체사상을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등 인신공격이나 “이제희 위원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네가 이제희보다 나이가

위인데 왜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냐, 쪽팔리지 않냐!”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하거나 (중략)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할 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를 보고 “부부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어떻고, 부부 사이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혁명조직 관계이기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계속 하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3) 신체의 자유 침해

복수의 피조사자가 “국정원 조사 도중 갑자기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수사관들은 “피조사자의 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국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집요한 자백을 강요당하는 와중에 느닷없이 의사와 간호기가 들이닥쳤다고 상상해 보라. 누구든 자신의 몸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물론이고 피의자 등의 없이 건강검진을 강제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된다.⁹⁾

〈사례1〉

1~2시간 지나면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요. 건강검진을 한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예를 들면 혈압, 체온, 이런 걸 재는 모양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피의자 등의부터 시작해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노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간호사가 들어오면 수사관이 “지금 검진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몸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갔을 때마다 세 번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장 나가라고, 제가 갔을 때마다 나의 동의도 얻지 않았고,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몸을 맡깁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주사라도 놓는다고 하면 주사가 무슨 주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국정원에서 어떤 이유로든 조사를 받으러 가면 거기 전담 의료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처음에 “몸이 안 좋나?” 물어봐서 “안 좋지 않다. 괜찮다.” 그러는데도 “의사랑 간호사를 들이겠다. 검사하겠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4) 장애인 및 아동 인권침해

국정원은 조사 대상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를 들먹이며 압박했다. 이는 압수수색이나 그 전에 내사단계에서부터 있어왔던 위협으로 사생활 감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장애인 자녀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진술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이용한 비인간적인 수사 행태라 할 것이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에 대해 과도한 신원보증 자료 작성 요구하는 등 수사상 우선 고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도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사례1〉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수사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큰애가 많이 아픈 거 같다고 하면서 애 아픈 것을 계속 거론하더라고요. (중략) 압수수색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다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애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애 병명이 뭐냐, 자기들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앰뷸런스를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 취한 것 알고 있느냐,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느냐?”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애가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는 거냐?” 고 했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왜 수사와 상관없는 애 문제를 거론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항의했고, 오전 수사를 받고 오후 수사를 거부했어요.

(B/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9) 의료진이 호흡과 맥박, 체온 등을 체크하여 했다고 한 사실로 보아 이는 수사기법의 하나로 추정된다. 외국 수사기관의 신문기법에 관한 논문에 의하면 이는 대표적인 심리생리검사기법(polygraphy test)일 가능성이 높다. “심리생리검사는 피의자를 선별하거나 자백을 도출하는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심리생리검사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혈압, 호흡의 깊이와 정도, 맥박, 피부 반응, 체온, 손바닥의 담 등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출처: 허인석, 「영미법계 수사기관의 신문기법과 자백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9호, 대검찰청, 2009, 210쪽

〈사례2〉

애가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저만 쓰면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아이한테도 각서 비슷한 이런 걸 쓰거든요. 각서 내용은 뭐 여기서 보고 들은 거 얘기안하고 얘기해서 피해가 가는 걸 감수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각서고 주민번호 쓰고 뭐 이런 거 개인정보 다 쓰는 것인데 아이가 면회를 갔는데 아이도 그걸 쓰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됐지, 아이는 그걸 왜 쓰냐?”고, 했는데도 “아빠를 보려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공안기관이 앞으로 아이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들었어요.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속 쓰리고 아팠어요.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3.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원칙이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¹⁰⁾ 국정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 수사 전 과정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법률이 명시한 기본권은 ‘공안사건’이라는 여론몰이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피조사자 묵비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날마다 유포되었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코미디까지 벌어졌다.

1) 묵비권 형해화

진술거부권은 본래 고문 방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는 바다.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그 의의 또한 다양하다. 먼저 인권적 차원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외에도 피고인의 침묵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침묵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10) 정희철, 기본강의 헌법(개정 6판), 도서출판 여산, 2011, 394-395쪽

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는 곧 진술거부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법적으로 정당한 자기 방어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집요한 방식으로 이 진술거부권을 무력화하려 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사관의 심리적인 괴롭힘 속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고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사례1〉

수사관들이 계속 추측으로 심리전을 하고, 그 과정의 발언이 고통스러웠고 모욕스러웠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묵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걸 다 듣기는 듣고 신경이 곤두서 있던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지금 조십니까?” 그리고 그런 게 신경 쓰이고 그런 거죠. (남편이) 갔다 오면 되게 머리 아파했어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두 번째 수사를 받으러 가서는 별로 들을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묵비를 하고 있는데 폭언이 난무하기 시작했죠. “잠이 오냐. 이렇게 할 거면 쉬고 하겠다. 차라리 쉬고 하자.”라고 하고. (중략) 묵비를 하니깐 “자신이 없으니 그런 거다.”라고 비꼬기 시작했고 “차라리 침대도 있는데 한 시간 주무시고 하자.”고 했어요.

(박민정/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자 그 사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열이 받아서 잠깐 쉬었다 해야겠으니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동안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내가 마음을 식히고 들어왔으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하고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다시 나갔다 오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2)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피의사실 사전 공표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이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것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온 사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과한 탓이 컸다. 시작은 국정원이었다. '내란음모'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부터 국정원은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했으며 압수수색에 동원된 공권력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중범죄자라는 인식을 기정사실처럼 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인권 존중 원칙 "수사기관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¹¹⁾ "비밀을 엄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할 것"¹²⁾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여해 발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수사와 인권」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¹³⁾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나 내란음모 같은 거대하고 충격적인 혐의일 때 더욱 그렇다. 사후 정정보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초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들이나 그 주변인들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은 치유되기 어렵다.

〈사례1〉

자기들이 이미 짜놓은 틀 안에서 왜 RO에 가입했냐? RO가 뭐냐 이것도 아니고 RO에 왜 가입했냐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식의 질문들. RO에서 지위가 뭐냐는 등.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초기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고, 계속 덜미 잡듯이 얘 하다가 요거 나오면 얘도 한번 쑤셔보고, 이런 수사가 계속됐으니까. 저도 남편 조사하다가 '얘도 엮어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니까. 무슨 근거로 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수사를 확대하는지. 내란음모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뜯금없이 내란음모 하려다가 안 되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물타기 하고.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11)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군사법원법 제229조 제1항

12)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군사법원법 제229조 제2항

13) 「수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경찰청 편, 2009년, 13쪽

〈사례3〉

처음에 저보다 먼저 소환조사를 받은 분들이 경기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언론이) 막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내란음모 혐의자라는 피의사실을 공표만이 아니고, 사진도 막 공개한다 해서 저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저는 변호사를 만난 다음에 변호사 차를 타고 후문으로 들어가서 민원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관련 기사〉¹⁴⁾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종교 교육시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30여 명의 비밀지하조직(RO)원들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현장 녹취록을 처음 입수한 〈한국일보〉가 62쪽 분량의 전체 문서 가운데 10쪽 분량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모든 내용을 다 옮겨 쓸 상황이 못돼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밀하게 보고 요약한 것이어서 맥락을 달리하거나 왜곡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략) “차라리 통합진보당 쪽에서 국정원에 요구하는 게 맞다. 국정원이 맘먹고 조작한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그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녹취록의 작성주체와 녹취주체 등과 관련해 이 기자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원본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서에 있는 일부 문장 사이에 MP3 MP4 등 기호가 있는 것을 보면, 녹음파일을 근거로 녹취를 끈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중략)

〈관련기사〉¹⁵⁾

(중략) 내란음모 사건 공동 변호인단은 22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에게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 주로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RO 조직원이 맞지요?’,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RO 비밀회합에서 ○○발언을 한 게 사실이지요?’라는 식이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대한 출처를 거론하면서 질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녹취록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수사 주체인 국정원에서

14) 〈미디어오늘〉 2013.08.30, 한국일보, 단독입수 녹취록 62쪽 중 10쪽 공개 “국정원 보관본으로 판단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81>

15) 〈연합뉴스〉 2013.12.06 내란음모 15차 공판…국정원 ‘황당한’ 수사 도마 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06/0701000000AKR20131206111151061.HTML>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국정원이 녹취록의 출처로 '언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략) 공안당국 한 관계자도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전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국정원 입장에선 피의사실 공표 등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수사기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3) 위법 및 탈법 수사

인권과 헌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원의 수사과정 전체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과정 전체의 불합리함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환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가 하면 법에 명시된 접견권까지 임의로 제한하기도 했다.

(1) 허위 증거 제시

〈사례1〉

저희 사무실에서 CD가 나왔는데 <김일성 전집> 등이 있는 내용이래요. 우리 사무실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자기들은 그런 짓은 안 한 대요.

(최진선/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저도 수술을 한 경험이 있고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아서 통째로 다운을 받아놓은 것인데요. 까페에서 알집으로 된 거 다운받아놓은 건데, 그게 의학 책으로 치면 200~300건 되는 자료인데 요만큼쯤(책 반쪽 정도) 되는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재료안내, 면봉으로 찍어서 쓰고' 이런 치료용으로 된 내용인 거예요. 폭발위험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지만, 그건 건강용으로 면봉에 묻혀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중략) 황당했던 건 그 후에 국회 정보위에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 와서 이걸 폭파실험했던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자기들이 특수부대원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통합진보당 RO 폭파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3 – 관련 기사〉¹⁶⁾

(중략) 오후 재판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최모 씨가 증인석에 나왔다. 국정원은 앞서 김 피고인 컴퓨터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보관돼 있다며 폭발실험까지 한 뒤 한 언론사에 실험 결과 사진을 제공해 위험성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 증언에서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폭탄 제조법 텍스트 파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 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 해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하위폴더 ‘건강도서’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질산 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피고인이) 폴더를 열고 파일을 실제 열람했는지 분석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의뢰하지 않아서 분석 안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김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적은 있지만 230여개 파일 중에 폭탄 제조법이 있었는지는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중략)

(2) 가족 고지 의무 위반¹⁷⁾

〈사례〉

지금 우리 아빠 잡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아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 거라고. 언제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되게 황당하고. 당시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남부경찰서에 있단 걸 알았는데 지금 가도 못 만난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부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면회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님이 접견을 하고 있었고요. 변호사님이 가족접견은 법으로 보장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면 사유서를 받아달라고.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16) 〈연합뉴스〉 2013.12.06 내란음모 15차 공판…국정원 ‘황당한’ 수사 도마 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06/0701000000AKR20131206111151061.HTML>

17) 「헌법 제12조 제5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언론’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에 대한 아쉬움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으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내면의 상처는 유사 PTSD 증상¹⁸⁾을 의심케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5월 모임’에서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국정원의 단정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했다.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 경로가 철저히 차단된 채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독점한 상태였기에 언론 보도는 국정원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언론사 간 선정적 경쟁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명무실했고 시종일관 ‘유죄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들의 발목을 붙들었다. 졸지에 ‘내란음모 혐의자’라는 극단적 올가미를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언론은 기본적 반론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종북’과 ‘내란음모’는 서로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며 여론재판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언론은 국정원의 노림수에 정확히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언론보도의 문제는 비단 보수언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기할 필요가 있겠다. 진보진영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는 그간의 술한 혀위 과장보도로 미루어 이 지면에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듯하다. 소위 몇몇 언론은 언론의 기본적 사명인 객관성을 포기한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존재적 기반이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일조한 혐의마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한’ 이유에 새삼 주목할 것이다. 진보의 이름으로 진보정치의 미래를 역설했던 진보언론이 보수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도태도를 유지한 배경에

18)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자. 심각한 외상을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후 나타나는 심각한 불안장애 등을 총칭함.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종북' 프레임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모든 상식의 공론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괴물이었고 합리적 이성의 블랙홀이 되었다. 진보언론의 소위 '선긋기' 전략은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도 '따돌림'이라는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부 논객들의 차별적 비판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쓰나미처럼 몰아친 '진보당 죽이기' 국면에서 그 목소리가 어느 바람에 휘둘려 누구를 찌르는 칼이 되었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언론의 객관성 상실이 불러온 사회적 낙인의 후유증 나아가 사건 당사자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로 남은 사회적 배제의 그림자를 다루고자 한다.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이유는 특정한 세력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병폐를 낳고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한 '종북' 프레임으로 시작됐으나 후폭풍은 진보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분열과 단절을 가져왔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공작을 시도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의 무리한 조작이 조금씩 밝혀지고 일부 언론이 늦게나마 객관적인 보도로 사건을 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건의 실체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나 사건 당사자들이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그에 대한 상식적 차원의 초보적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합리적 소통을 기대한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1차 압수수색이 벌어진 2013년 8월 28일. <한국일보>는 인터넷으로 특종 보도¹⁹⁾를 냈고 곧이어 <조선일보> 등이 해당 기사를 받았다. 압수수색이 벌어진지 약 두 시간 경과한 시점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²⁰⁾도 언론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보도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와 책임의 영역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 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808145721950.htm>

20)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실정법 상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책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정정보도 청구 및 반론보도 청구 등이 있지만,²¹⁾ 문제는 언론보도가 선행하고 피해 구제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후 구제는 보조수단일뿐 온전한 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언론과 개인의 관계에서 언론이 언제나 우위에 서는 이유가 여기 있다.

1) 보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흔히 언론은 ‘국민이 부여한 알 권리’를 강조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경우 ‘알 권리’를 내세워 취재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해 가져야 할 언론의 태도라 할 것이다. 권력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에 대해 또 다른 피해를 가한다면 이는 ‘알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받지 못한 취재거부권

개인의 사생활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사진은 당사자의 실명과 더불어 그대로 기사화되었다. 단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강제로 드러내야 했다. 그들 중 일부가 정당인이라 해도 언론의 행위는 합리적 예측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 무차별 공개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판시한 바 있다.²²⁾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취재를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취재를 강행한 언론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사례1〉

가시라고, 우리 안 찍었으면 좋겠다. 나는 취재 거부권, 나는 취재를 거부한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막 짹짜짜
찍고 그러더라고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21) 이외에 사전적 구제책으로 보도 금지 가처분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그 재생산성이 방대하고 언론사의 비방 목적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낮아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사례2〉

언론 카메라가 많이 왔는데 언론사와도 엄청 싸웠어요. 못 들어오게. 〈경향〉이나 〈한겨레〉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종편 쪽에는 취재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나와서 나가라고, 보도를 똑바로 할 것도 아니잖냐고. 압수수색하는 거 찍고, 나오는 거 찍으려고. (중략)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가족들도 얼마나 피해가 크고, 심리적 부담감이 크겠어요. (임미숙/정당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2) '동네 망신주기' 방식의 무차별적 사생활 침해

소란스럽고 강압적인 보도로 말미암아 사건 당사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되었다, 거주지와 사무실 등 개인이 몸담아온 장소에서, 그리고 사적 공간에서,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미야가 되었다. 공적인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짓밟았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 할 것이다.

〈사례1〉

저희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중략) 이미 전경 차, 보도차량들이 저희동네에 짹 깔려가지고 주차라인마다 서 있는 거예요. 국회 기자회견 처음 해봤는데 그 때 그 큰 카메라는 우리 집 쪽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 났는 줄 안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살 꺼니깐. (중략). “이게 뭐하는 거냐?” 했더니, 기자, 경찰에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중략). 지나던 사람들과 동네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죠. 사진 찍고 그러니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기자들한테 철수해달라고 요청해도 안하고 버티고 눈도 안 마주쳐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남편은 잡아가도 우리는 살아야하는데. 케이블 TV에 보도가 하루 종일 나와서 이십년 전에 연락 끊긴 대학 동창이 전화 와서 “그게 너니?”라고 그런 참. 전화 밟느라 바빴어요.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2〉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카메라 장비를 켜면서 들어왔고 SBS 기자들도 왔었어요. 집 앞에서 집안을 찍으려고 해서 같은 동네 사시는 당원이 오셔서 막 싸우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 집을 향해

22) 대법판례(1998.7.24. 96다42789)

진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동네 활발한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 일 있고 한참 후에 카페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 집에 대한 내용이 카페에서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주차장에 기자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1605동에 국정원 내란음모 관련자가 살고 있었나 봐요.’ 이런 것이 짹 깔린 것을 보고 그 후로 카페를 다시 가지는 않았어요.

(A/구속자 가족)

2) ‘중립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언론

많은 언론들이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피의사실을 전제로 보도했다. 언론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양측 모두의 진술을 동등하게 다뤄야 할 법적 ‘책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읽기에 언론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 보도에서 언론은 그러한 기대를 시종일관 외면했다.

(1) 실종된 무죄추정의 원칙

사건 발생 초기부터 언론은 한 목소리를 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사례1〉

처음에는 언론보도 통해서 너무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되어 있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탈북자들 오고 언론 엄청 오고 들어가는 데 난장판이고 이랬는데. 언론이 총집중되어 있었는데, 호송차가 들어오면 쇠문을 내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진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론이 개떼처럼 붙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 입장에서 포승이나 죄수복 입고 있는걸 보이고 싶지 않으니 거길 가족들이 막는데 기자들이랑 실랑이가 엄청 있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니까 한 기자는 이석기 씨가 무슨 가족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 남편이 재판 받고 있다.”고 하니 뒤에서 “저거 사진 찍어! 그림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기사²³⁾에 났어요. 가족 둘이랑 막고 있는 게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런 제목으로. 근데 참 카메라가 총이더라구요. 못하게 막으니까 저를 막 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경찰도 있고 했지만, 그때

언론이 정말 무서웠죠. 이런 게 공판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카메라 플래시 그런 거. 재판정 들고 날 때도 막 짹어대는 것. 거기서 가족의 인권 이런 건 없는 거죠. 낱낱이 밝혀지고 그런 거.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그때 당시엔 프락치 매수가 당장 알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떤 근거로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 짓고 그에 대한 이유는 안 밝히고 있었잖아요. 계속 국정원이 지하조직이 있다고 선언하듯이 방송을 했잖아요.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당사자)

〈사례3〉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언론에 사실이 공표가 되고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추측이 아니고 거의 90프로 이상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억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중략) 〈한국일보〉는 출처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원과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은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잖아요.²⁴⁾ 이후 270 몇 곳인가 고쳐졌지만 그거에 대해 정정보도한 적은 없구요.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4〉

〈TV조선〉에서 와서 이제 저희 집 내부랑 막 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애요. 그런데 다행히 1층 아줌마가 안 열어줘 가지고 이제 그냥 외형만 짹고 간 거 같애요. 근데 그날 저녁에 MBC 9시 뉴스에 맨 얼굴로 해갖고 제 얼굴이랑 저희 집이랑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사에서 짹지 못했는데, 국정원에서 우리 동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 넘겨준 거예요. 사진을. (엄경희/구속자 가족)

(2) 취재조차 없었던 허위, 왜곡보도

언론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로 인한 상처는 깊었다. 저항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 느낌, 언론에 대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피해자들을 즐끈 괴롭혔다.

〈사례1〉

저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되던 날, 그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거기에 참가했었던 저 외에 4명, 총 5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월 12일 강연회에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그 날 강연 내용은 경기도당의 정세 강연회였습니다. 반전 평화를 호소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언론이라든가 기자라든가 뭐 그 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에게 그날의 사건의 실체, 그 날 강연의 내용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요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백현종/종교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저를 포함해서 몇몇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어요. 5명 정도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했죠.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5월 12일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맞다, 그런데 우린 ‘RO’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 내란음모 녹취록에 대해서 구구절절 해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과 국정원이 우리보고 지하비밀혁명조직 구성원들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아니다, 처음 들어봤다, 매도하지 마라.”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재판도 아직 다 진행이 안 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기자도 전화가 오거나, 취재 요청을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5명에게 요청한 기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용준/정당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3〉

헤드라인을 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구나.’ 그야말로, 정세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서 반전 평화라는 것을 정신차려서 같이 하자는 취지였는데, 거꾸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으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찾아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중략) 기자들에게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해야 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 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저에 대한 신상도 확인하지 않고, 신상이 다르게 신문에 나갔습니다. ‘수원지역에 RO가 많은데, 기관에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 실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명이 윤봉선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윤경선/지역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4〉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월 모임에 안 갔다고 했다가 갔다고 번복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말을 바꾼 게 전혀 아니죠. “너 내란음모하는데 갔어?”라는 물음에 “아니 안 갔어.”라고 대답한 거고, “5월 12일에 강연회 했는데 갔어?”라는 물음에는 “네. 갔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안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 바꾸기 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3)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반론권 및 정정보도 청구권

법적으로 편파 보도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낱 장식에 불과한 권리일 뿐이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빌미를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 아예 인터뷰에 불응하기도 했다.

〈사례1〉

기자 인터뷰를 계속 거절했어요. 할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자가 좋게 해도 데스크 가면 다 편집되니깐…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안가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뀐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죠.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2〉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 진보 언론을 포함해서 모두가 진짜 내란음모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나 가족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는가요? 없었죠. 인터뷰 요청이 와도 발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온전히 전달될 것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3) <http://news1.kr/photos/647633>

24) 〈한국일보〉 2013.09.02., 2013.09.03. 국민독자의 공정한 판단위해 'RO' 녹취록 전면공개합니다.(지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0203331921950.htm>

그 당시 많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러 가기도 했는데 발언해도 어떻게 왜곡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3〉

인터뷰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보도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제가 한 어떤 얘기라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할 것 같은 표정으로 만나서 내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용이 다 제대로 보도는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신뢰하는 기자나 언론사가 있었다면, 우리 얘기 아빠뿐만 아니라 잡혀 있는 얘기 아빠들 살아온 과정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어려움을 감소하고 자처한 삶이었지 추호도 어떤 일신상의 안락이라던가, 폭력적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또 누구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가족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죠. 그때 당시는 어떤 언론도 믿음이 가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했어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4〉

기사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못해서 정정요청을 하지는 못했고, 저희 집 말고, 남편이 협동조합 이사장인데요, 사무실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나중에 거기 한의원에 대한 오보가 계속 쏟아졌어요. 그것을 조합 자체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중략) 압수수색 이후에 뉴시스와 어딘가 계속 전화가 오기는 했어요. 맨 처음에 뉴시스의 남자 기자분이 전화를 해서 심경이 어떻느냐라고 막 물어봐서 간단한 대답은 했었는데요, 그 기자가 다른 가족에게 다 전화를 이미 하고 전화를 한 것이었던 라구요. 나중에 다른 가족이 말하기는 자기가 말한 데로 안 나오더라. 그러니 아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서워서 다음부터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A/구속자 가족)

〈사례5〉

잘못 발언한 시의원을 고소했으나, 엊그제 증거불충분으로 검사가 무혐의 혐의를 내렸습니다. 보도된 언론기사는

분명히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믿고 기댈 데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윤경선/지역 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6〉

갑자기 언론에 KBS 9시 뉴스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제폭탄제조법이 있었다고 보도됐죠. (중략)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TXT 텍스트파일 그 자체로 다운이 되거든요. 뭔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의료자문을 받아보니까,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 민간요법에서 쓰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본인이 마치 가필해서 메모한 것처럼 9시 뉴스에 다 나갔죠. 근데 저희가 바로 그걸 가지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죠. 그리고 KBS에 전화해서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전달하고, 앞으로 반영될 9시뉴스에서 진보당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KBS 측이 거부했죠.

(홍성규/정당인/압수수색 대상자)

4) 선정적인 보도

언론사들이 자극적으로 뽑은 20자 이내의 헤드라인은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사건의 핵심과 무관한 내용의 선정적인 보도로 당사자들은 줄지어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대중의 눈길을 끄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겠으나, 당사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내상을 입어야 했다.

〈사례1〉

황당했던 건 그 후에 국회 정보위에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 와서 이걸 폭파 실험했던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자기들이 특수부대원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통합진보당 RO 폭파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선정 보도들. 이런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열어보면 "할려고 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정보위에서 남재준 원장이 했던 걸 그날 브리핑을 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폭파하려고 했던'이라고 얘기한 거죠, 대체 누가 하려고 했단 거예요. 폭파에 대한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건 수사과정에서도 증거 채택 조차도 안됐어요. 쇼한 거거든요. 종편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언론보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이정희 대표가 그 날 강연에 참석했던 당원들을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기자회견 한 게 있어요. 에이포로 일곱 여덟 페이지 정도의 기자회견문도 읽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뭐 농담이었다. 총을 준비하자.’ 뭐 이런 것들... 실제 농담이었거든요. 전체 여덟 페이지 가운데 그 단어 하나만 딱 따와 가지고 ‘뭐 농담이었다.’ 그런 것만. 언론에서 매도해 버리는... ‘한국 언론이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절감했던 경우죠.

(백현종/종교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2. 질리지 않는 ‘종북’ 논쟁

2013년을 강타한 화제의 단어는 단연 ‘종북’이다. 비록 ‘내란음모 사건’ 때문에 생긴 말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종북’ 논란은 확대되고 증폭되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다양성의 존중이고 관용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북’ 논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 정도로 상식이 무시당했다. 진보 진영이라면 누구나 ‘종북’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배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종북이 아님을 호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요컨대 ‘종북’은 합리적 시민의 일상까지 침범하는 괴물이 되었다.

1) ‘종북’ 여론이 조성한 공포 사회

‘종북’ 여론몰이는 필연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했다. 여론에 의해 형상화된 자신의 험상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하는 상황은 극심한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적인 반감 표출로, 피해자들의 일상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례1〉

중요한 건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쟁 위기론'이라 규정을 하고 거의 매일 반전 평화 서명운동을 하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이후, 거리에 서명판을 들고 나갔는데 '빨갱이'라고 욕하고 침뱉는 등의 일이 있었어요. 사실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야 이러다가 백색테러도 있겠구나. 실제로' 언론 논조를 보면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정용준/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2〉

언론보도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당에서도 이런저런 해명, 이정희 대표의 해명 기자회견 등이 그 기사들이 다 왜곡되는 것을 보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수원에서 같이 구속된 한 분이 계신 데, 그때 국정원에 면회를 같이 가려고 갔다가, 차에 낙서 테러를 당하는 걸 지켜봤어요. 마르지도 않은 페인트를 함께 지우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 후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요. 되도록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언론 왜곡보도의 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구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심지어는 지금도 법원 앞에 보수단체 플랑에 '화형시켜라.'는 이런 것들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A/구속자 가족)

〈사례3〉

우리 회원들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 잡혀갈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언제 적 이야기인가? 유신 시절이나 이야기하던 '쥐도 새도 모르게'

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노인들이 느끼고 있구나, 노인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를 만나도 뭐라 이야기하기가 편하지 않아 하는. 비난이야 내가 감수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아예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두려운 상황이구나. 이게 진짜 공포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영향력이 이미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2) ‘종북’을 겨냥한 야만적 ‘마녀사냥’

‘종북’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가. ‘종북’은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낙인을 찍기 위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통상적인 낙인이 죄를 씌우려는 자가 그 죄를 보임으로써 입증하는 것인데 반해 ‘종북’ 논란은 의심을 받는 자, 아니 검증을 받는 자가 적극적으로 ‘종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세의 ‘마녀사냥’과 닮았다. 죽음으로써 무죄를 증명해야 했던 ‘마녀사냥’보다 우리 사회의 ‘종북’ 논란이 덜 야만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1) 정치적 사망선고, ‘종북’ 낙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당인들은 ‘빨갱이’ 혹은 ‘종북’ 세력으로 언론과 여론의 끗매를 맞았다. 이들은 ‘종북’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정의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의미가 확장된 ‘종북’ 낙인으로 인해 정당 활동의 토대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사례1〉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당과 ‘빨갱이’ 정당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거죠. 빨갱이는 종북으로 바뀐 것 밖에 없고. 종북의 낙인효과는 오래가거든요. 좌절감은 정치적 사형선고에요. 낙인이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복권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고민이죠.

(이재희/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2〉

남북관계가 누가 얘기하면 경제이고, 누가 얘기하면 종북이 되는 건데. 지금 접경지대에서 여차하면 터지는데. 저는 남편의 발언도 그런 취지라고 봐요. 연평도 같은 사건 일어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지하벙커도 만들어 놓고 하는 접경지역 비용만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은 분단,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걸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계속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건 북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발언’이라고도 얘기하고 보란 듯이 지역에서는 ‘빨갱이 친북좌파’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남북경제평화 문제하고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약이 똑같아요. 정책방향도 똑같아요.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이걸 우리가 제시하면 종북으로 이용해먹고 자신들이 말할 때는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그건 경제라고 하잖아요.

(안소희/정당인/ 압수수색 대상자)

(2) 자기검열

종북 논란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종북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닌, 타인의 시각에서 보이는 말과 행동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심 실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저는 아까도 잠깐 자기검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종북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보당원인 이유는 아이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종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꿈조차 꾸면 안되는 건가. 아이 방에 지구본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이가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지요?”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무서워서 못했어요.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나를 종북이라고 부를까봐. 그래서 “못가, 가면 안 돼, 못가.” 어디까지가 종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꿈꾸지 말아야 하나. 내 아이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쭉 살아가야 하나.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A/구속자 가족)

〈사례2〉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거, 그걸 사실 절감했던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혹은 뭐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인지?’라는 얘기보다는. 친북과 종북으로 쉽게 매도하고 또 그렇게 딱,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박근혜가 하면 뒤 친북과 종북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친북과 종북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꼴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쉽게 주눅든다고 하는 거죠.

(김석용/정당인/ 압수수색 대상자)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사건 당사자들은 여러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노출과 더불어 근거 없는 비방이 이어졌다. 의료인이 진료를 회피하는가 하면 사찰, 왕따, 비방, 사이버 폭력까지 일상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내면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이웃의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가 되고 있다는 죄책감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했다. 편의상 이웃, 가족, 진보진영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사건 이후 비자발적으로 사생활이 노출된 피해자들은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매일 마주해야만 했다. 오랜 시간 일궈온 삶의 터전과 인맥들은 쉽게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당사자로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말한다.

〈사례1〉

병원 진료 거부당한 사례는 내막이 이런 거죠. 병원 사람을 평소 알고 지냈는데 “꼭 여기서 진료 받아야 되겠나?” 고 물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도 같은 종북몰이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제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루자 내지는 같은 종북 패거리가 되는 건데,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 이야기라도 길게 했다가는. 왕따, 고립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2〉

이 사건 후에 제 차에다가 누가 ‘간첩 차’라고 써놨어요. 동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중략) 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놀랬고, 되게 크게 써놨는데 섬뜩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왔다 가고 서울구치소에 고속도로 가야 해서 울면서 박박 지웠죠.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당시에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고 사람들이랑 인사하며 지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에 빠져서 멀리서 제가 오는 것만 보여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랑 만나는 것만도 무서워하는 거죠.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성당에서 구역모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나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가서 “빨갱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대신 “아니다”라고 반론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같이 “빨갱이다”라고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화정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보수단체가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회사 사장한테 파주경찰서 경보과장인가가 전화를 해서 “거기 이영춘이 근무하나?” 등등 물어보고 해서 (중략) 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지만 우리 회사에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춘 /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4〉

저희 동네에 만 명 정도 회원이 되는 양주 까페가 있는데, 남편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초기에 보수적인 분이 있는데 김홍열 위원장이 ‘이런 분이 이런 일에 처했는데 우리는 이웃으로 살아왔고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고마운 글을 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분이 “빨갱이 이웃이 어딨냐?”고 댓글이 달려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종북단체 어쩌구 결의안 같은 걸 만들었어요. 양주시 의회의 결의문 같은 걸요. 한때는 야권연대로 도의원 선거에 남편이 나와서 38프로 얻고 그랬었는데. 그때 연대해서 시의원 되셨던 분도 그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고. 종북 낙인찍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평생 갈 것 같은 주홍글씨라 너무 힘들어요.

(김홍열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5〉

저희 2층이 세탁소인데. 거기에 보수 할머니 모임이 50명 모임이 있대요. 자기네 말로는 유지 모임이 있는데. 그 계모임 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오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옷 입는 거, 뭐 다 (웃음) 체크하고. 뭐를 어떻게 했네. 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거 불편하잖아요. 계속 모여서 수근수근대죠. 밤 10시까지.

(엄경희/구속자 가족)

〈사례6〉

이 집을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국정원에서 와서 해집고 간 이 공간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남편 나오면 꼭 떠나야지 하는 생각, 내가 혹시 다른 곳에 갔는데 이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여긴 오래된 이웃사촌들이라 괜찮지만 낯선 곳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에도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다. 대체로 연루자에 대한 원망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사례1〉

저희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건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전화기도 꺼놓으시고. 사건이 날 때 쯤, 저희 남편의 막내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되었나, 몸조리를 하려고 막내 아가씨의 친정어머니가 오셨더라구요. 오셨는데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신문기사에 RO명단이 어떻고 RO조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돈 어른 말로는 누가 그러던데, 그 신문기사에 난 RO명단 중에, 막내 아가씨와 그 남편 이름이 들어가 있다더라. “니네 오빠 때문에 내 아들까지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애 낳고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펑펑 우시드라구요. 저희 가족 모두,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어머님이 계속 계시다가 하루는 미용실을 가셨는데, 종편 TV가 나오는데, 계속 이석기 내란음모, RO 어쩌구 저쩌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용실에 있는 손님들이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나 봐요. 어머니가 그냥 기다리시다가 머리도 못하고 그냥 오셨더라구요. 또 그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시드라구요.

(A/구속자 가족)

〈사례2〉

저희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거의 날마다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전화하셔서 또 언론에 공개될 만큼의 집회가 있으면 늘 전화하세요. “너 혹시 어디냐?” 저희 작은 아버지도 역시 수시로 전화하시죠. 전화하셔서 “끼지 마라, 나서지 마라, 니가 낄 데 아니다. 너는 너 좋다고 하지만 니 애는 어떡할 거냐?” 소위 얘기하는 연좌제에 대한 공포들이 있으신 거죠.

(백현종/종교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3〉

누나는 가고 싶어 하는데 못 오게 해요. “나도 면회 못 가냐?” 하면 못 간다고 해요. 오면 슬프고 눈물 날 것 같고 하니 누나는 오지 말라고 그런 거고. 형은 가도 좋은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센 척하고 안 가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당 활동하면서 노출되면서 살면서 사는데 남이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당원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친척들이나 형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4〉

저희 가족은 제가 5월 정세 강연에 간 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안 갔다고 했지만 다 알 거예요. 경기도당의 모임이고 100명이 모였다는 데 아들이 안 가고 남편이 안 갔을 리 없죠. 눈치를 채죠. (중략)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아닐 밥도 제대로 못 드셨으니까요. 부모님 입장은 아니니까, 전화도 많이 오셨죠.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강연 한 번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죠. 생활은 돌아가지만 사람심리가 공포가 주변이 뒤죽박죽이 되고….

(C/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3) 진보운동의 비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Voltaire)는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는 데에는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이 유명한 경구는 ‘관용(뜰레랑스)’라는 단어의 설명에 덧붙여 마치 그것의 정의처럼 쓰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단의 ‘다름’을 전제로 한 관용이다. 어귀의 방점이 ‘연대’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선긋기’에 찍힌다. 탄압을 받는 쪽에서 보자면 ‘동지’라고 여겼던 이들의 비판이 훨씬 혹독했을 것이다. 하물며 그 비판마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상실감이 훨씬 커다고 증언한다.

〈사례1〉

주변에서 진보운동이나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근본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거죠. “왜 걸렸냐?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그런 거죠. 뭐라고 얘기할지 너무 뻔해서, 국민은 설득이 너무 길고, 운동권은 정권에 탄압에 빌미를 준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국가보안법 체제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정치 집단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같 문제이죠.

(이재희/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2〉

국정원보다도 우리 진영 안에 편견과 배제가 제일 힘들게 느껴집니다. 탄압 받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잖아요. 서로 차이는 있더라도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각자가 가진 지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목적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싸우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제일 힘들죠.

(정용준/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3〉

운동 진영에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궁금해 하는 것은 5월 모임에 갔는가, 이석기와 어떤 사이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그런 것이 속상했고. 마치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중략) “너희가 빌미를 줘서 모든 진보를 말아먹는다.”는 시선이 힘이 듭니다. 딸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통합진보당이 말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싸우면 될 텐데. 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경선/지역 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4〉

진보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우린 뿐 달린 도깨비 아닙니까? 소위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쨌든 진보당이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통합진보당의 방탄막이가 되려고 하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데요. 우리는 낙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노예, 역적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진보당, 경기동부연합은 낙인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쟤네야?”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죠.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저희는 작년 올해 계속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이 당하면 적응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더 깊어지죠. ‘쟤네들은 진보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억울한 거죠. 아이들이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하면 저항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집단 이지매 대상이었죠. 조롱의 대상. 그런 걸 벗고자 노력해서 나아진 게 1년이 걸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었어요. (중략). 어버이 연합이, 조중동이 우리한테 그러는 게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한겨레〉나 〈경향〉이 그러니까, 진보언론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윤용배/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생활상의 변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범죄가 되었다.”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돼 징역을 받고 재심 끝에 27년 만에 무죄를 받은 송석민은 ‘1993년 3월에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 10의 지진이 일어나 수만 미터의 간격에 침몰되었다가 27년 만에 구출되었다.’고 표현했다.²⁵⁾ 과거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겪은 삶의 침몰은 현재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관련자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천재지변처럼 한 순간 가족과 꿈, 미래를 잃고 저 깊은 땅속에 홀로 있는 고립감과 공포, 삶의 희망을 회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온 조작간첩 송석민의 삶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함께 언론의 공세로 ‘내란음모’라는 혐의는 법적 ‘혐의’로서 사실 여부와 유·무죄를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인 낙인이 되었다. 구속된 사람들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들의 가족과 관련자들, 진보당 전체가 반국가적인 범죄자가 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발표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규정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경제적, 사회적 삶이 파괴되며, 국가의 감시를 받고, 이웃의 배척과 증오의 대상이 되며, 이는 ‘사회 관계망의 파괴’, 그 자체라고 한다. ‘간첩의 가족’이 받는 고통은 ‘간첩’으로 규정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보면서 곁에서 느끼는 ‘제3자’의 정신적 고통이 결코 아니며 ‘간첩’으로 규정되는 순간, 국가 권력과 사회 전체로부터 ‘적’으로 간주되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사회의 배척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이웃에 의한 집단 따돌림과 소외, 강요된 실직과 취업 곤란, 가족관계의 해체, 무력감이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²⁶⁾는 결과를 내놓았다. 위 결과에서 ‘간첩’을 소위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가족으로 바꿔도 무방할 만큼 동일한 결과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장에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 이후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관련자들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로 인한 각 개인생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룬다. 이 사건은 생활습관의 변화와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적인

25) 진실의 힘 <뉴스레터 2호> “진실의 힘,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http://www.truthfoundation.or.kr/index.php?mid=news02&page=5&document_srl=1368

26) <2013 광주아시아포럼 : 201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자료집, 2013.5.16.

부분에서부터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사회·경제적인 관계로 확장되며 사건의 당사자에서 가족, 동료 등 주변으로 확장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불안과 긴장이 이어지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내란음모'라는 비현실적인 범죄와 구속, 압수수색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기인한 것이며 국정원의 감시와 '프락치'의 존재로 인한 트라우마와 긴장 때문이다. 국정원이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앞으로 압수수색을 겪게 될 것이라는 긴장과 구속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긴장과 불안으로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자기검열과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서 '내란음모'라는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것이 관련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넓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긴장이 형성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정당 활동에서 이런 변화가 제약이 되었다. 구속자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구속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이것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운영도 어려워졌다. 특히 지자체의 관련 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사건과 무관하게 실직을 하게 되고 업체 종사자들의 직장생활까지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

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사건 관련자의 구속에 대한 걱정과 불안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바뀌고 있다. 특히 신분 노출로 위축되어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외부 소통을 단절했다. 더불어 가족, 친척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변화도 나타났다.

1. 일상 생활의 변화

1) 압수수색으로 인한 트라우마²⁷⁾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압수수색으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트라우마는 특히 사찰, 도·감청, 감시에

27)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용례가 많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장기 기억되는데, 트라우마의 예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불안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트라우마 [trauma]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기검열, 과도한 흔적 지우기, 그리고 불면증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자의 가족은 이후 생활에서 불안과 위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수수색 대상자나 가족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겪었고,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이 새벽에 들친 압도적인 공권력에 대한 공포감에 대한 기억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1) 감시를 의식한 자기 검열과 흔적 지우기

압수수색 당시 사소한 물품이나 일상적인 메모가 수집되는 것을 경험한 후,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여러 습관이 생겼다. 작은 행동과 말, SNS 상의 대화내용 등이 도·감청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로인해 일상이 긴장상태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경우 SNS나 문자,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고 말하는 순간마다 긴장해야 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물품과 기록들이 조작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계속 주변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자주 한다. 자신이 소중하게 느끼는 삶의 기록을 국가기관이 들여다본다는 불쾌감 때문에 사적인 기록까지 모두 없애고 있다.

〈사례1〉

괜히 옷을 한번 더 털게되요. 이거 뭐지? 영수증이네. 일단 찢어. 책, 사회과학 책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뭐를 할지 모르니 이것도 갖다버려. 나의 주변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의 기억이고
자취인데, 어떻게 보면 나의 역사를 없애는 거고. 벌거벗고 사는 거구나.

(C/정당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내 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핸드폰도 다시 바꾸고, 컴퓨터도 다시 바꾸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수첩도 안 쓰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컴퓨터를 안 써요. 기록을
안남기고 머리로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수첩, 적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내 흔적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니까요.

(임미숙/ 정당인/ 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3〉

30년 넘게 모은 일기와 편지. 제가 해직당하고 복권되면서 모았던 그 소중한 재판기록 등도 다 버렸어요. 매우 힘들게 이겼거든요. 나의 인생에 소중한 기록들을 다 버렸어요.

(윤경선/ 지역아동센터 대표 / 5월 정세 강연 참석자)

(2) 압수수색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위축

압수수색을 경험한 그날의 기억은 모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직원에게 문을 열어준 새벽 6시~7시는 대부분 압수수색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끔찍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른 아침시간 대에 나타나는 긴장감과 과도한 문단속, 불면증과 건강 악화는 그들의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당사자들과 가족은 압수수색 당일이 떠오르는 것들을 외면하고 자했고 아예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나거나 검은색 자동차가 집 밖에 있을 때 이들은 극도로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대부분의 경우, 압수수색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문을 열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국정원의 조사가 가능했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사례1〉

누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우리 집에도 들어오려나?’하는 생각이 들죠. 작년 4개월 동안에 계속 민방위 훈련 하는 거예요, 아침에. (중략) ‘혹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집안 청소를 시작해요. ‘이거 버려야 되나?’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중략) 그래서 다 버리고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압수수색 당하면 또 정리하고 또 버리는 게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아이도 긴장되고, 나도 긴장이 되죠. 아침 일과 자체가 정신이 없는 거죠. 하루의 시작부터 긴장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임미숙/정당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지난 가을에 한번 차 빼달라는 전화가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중략) 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고 경찰들이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서 혹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차 키를 무척 조심스럽게 갖고 나갔어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3〉

압수수색 당하고 이틀 만에 살이 5kg가 빠진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압수수색이) 여섯시 반에 들어왔었는데 다섯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죠.

(김홍렬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4〉

이 집을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국정원에서 와서 헤집고 간 이 공간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남편 나오면 꼭 떠나야지 하는 생각.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사례5〉

다른 집은 변호사 오면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쉽게 열어줬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이 증거가 되진 않았을까. 뭐 그런 거? 지금도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완력. 그 사람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6〉

누구를 만나러 커피숍을 가면,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국정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거 듣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중략) 이게 비정상 상태인 거는 맞는 건지, 정상인 건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나요?

(엄경희/구속자 가족)

2) '내란음모'혐의로 인한 트라우마

내란음모라는 혐의는 당사자들에게 국가보안법과는 달리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무엇이 내란음모인 것인지도 명확히 인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구속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과거 인혁당 사건 등을 통해서 가늠할 뿐이었다. 과거 유사한 사건들과 관련지어 생각할수록 당사자들에게는 황당함과 분노, 억울함이 크면서도 구속과 죽음을 연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과거의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에 노출되면서 더욱 커진다.

(1) 죽음과 구속에 대한 공포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고, 어쩌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표현했다. 과거의 내란음모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공포는 더욱 커진 듯하다.

〈사례1〉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지금도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느낌. 어떻게든 죽지만 않으면 나중에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10년 20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질 수 있지 않은가. (중략) 여적 죄가 논의될 때는 정말 죽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더이상 여적 죄가 적용이 안된다고 나왔을 때야 이후에야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다. 감옥 가는 것에 대한 공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삶을 달리하는 공포는 심했다.

(윤경선/지역 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진짜 오싹한 거고 정말로 옛날 역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루 아침에 간첩이 되는 건가 싶었죠.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고객과 미팅하다가 전화를 못 받으면 저희 어머니는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 잡혀간 거 어디냐면서 밤마다 눈물의 문자를 보내줘요. 너는 아니지 하고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간다고 걱정하죠.

(박지현/씨앤커뮤니케이션즈/압수수색 당사자)

(2)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소외감과 무력감

‘내란음모’ 혐의가 가지고 온 사회적 낙인으로 대부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이는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극단적인 생각까지 불러일으켰다. 아무 이유 없이 국정원이 다시 건드릴 수 있을 거라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결국 유죄로 선고될 것이라며 무력감을 나타냈다. 법적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함께 사건이 재판 중임에도 진보당과 구속자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노골적으로 적대하며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심이 생겼다.

〈사례1〉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요. 사건이 종결되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이 사건을 추진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건이 종결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략) 혼자 외딴 섬에 이 집단만 동동 떠다니는 듯한 느낌. 거기서 오는 고통, 공포.

(박민정/정당인/ 압수수색 당사자)

〈사례2〉

1월에 또 뭐가 터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월 해도 국정원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요. 구정 때 우리가 여행을 갈까 생각도 했는데 여행 도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긴장감이 존재하는 거죠.

(임미숙/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3〉

큰아이가 요즘에 그래요. “아빠가 죄가 없어도 그냥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판사나 사회 지도층들이 다 생각이 바른 것 같진 않아. 아빠가 무죄로 나와도 사람들은 아빠가 무죄로 나온 것보다 들어간 것만 기억할 거 같아.” 그렇게 큰 애가 얘기하더라구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밤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데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탄원서를 받는데 이거 받는다고 달라질까 이런 생각.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쭉 내려가면서 받아야지 하는데 (중략) “탄원서 많이 받으면 아빠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드는 느낌.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4〉

재판을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블루유니온이라고 하는 탈북자 단체하고 고엽제 전우회, 뭐 이런 보수단체들이 이석기 의원을 찢어죽여야 된다라느니 칼로 쑤셔 죽여야 된다라느니 그 다음에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느니 막 그러면서 저 빨갱이들이라느니…(중략) 그래서 처음에 재판과정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구 차가 나갈 때 재판이 끝나고 차가 나갈 때 기자들이 일부러 노출시켜서 언론에 범죄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했죠. 왜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엄경희/구속자 가족)

3) 언론으로 인한 트라우마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언론의 왜곡보도를 보며 사실 조작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한편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왜곡보도의 심각성을 느꼈다. 특히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압수수색 현장에 기자들이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신상이 노출됨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미디어가 재판 방청을 하기 위한 가족들을 과도하게 노출시켜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다.

〈사례1〉

권력의 공포라고나 할까 그 사람들의 힘이라던가 이런 것에 너무 짓눌렸죠.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덫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편파적으로) 보여주고 없는 죄도 만들겠다 싶어요. (중략)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언론에 사실이 공표가 되고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이 억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김홍렬 배우자/구속자 가족)

〈사례2〉

굉장히 무서웠어요. 당에서도 이런 저런 해명, 이정희 대표의 해명 기자회견 등이 그 기사들이 다 왜곡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신상을 팔 수 있는데,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구요. 원래 저녁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곤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A/구속자 가족)

4) ‘프락치’로 인한 트라우마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프락치의 존재에 대한 충격을 이야기했다. 대상자 중 일부는 분노를 표시했고, 일부는 프락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어떤 이들은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프락치로 인해서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거나, 자기검열을 하게 되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사례1〉

어제도 술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말하던 내용들을 제가 스스로 차단하게 되죠.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 문제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에도 당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평소에 거의 활동하지 않던 당원이 오면 ‘어? 얘기도 안하고 왔네. 왜 왔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 속에서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하고 검증하게 되죠.

(임미숙/정당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저흰 일상적으로 항상 믿음과 의심을 같이 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 수위 아저씨나 자주 가는 식당의 아주머니 아래층, 위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람들… 항상 반갑게 인사는하면서도, 시선은 피할 수밖에 없죠.

(중략)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실/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압수수색 당사자)

〈사례3〉

제가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비극적이잖아요. 더 아파요.

(중략) 예를 들면 누군가 꼬치꼬치 캐묻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은 궁금하니까 묻는 건데. (중략) 그럴 때는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하구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내 행적이나 생각을 낱낱이 밝히고 검증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서글프죠.

(백현종/종교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2. 경제적 어려움

1) 해고와 실직으로 가정생활 위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압박을 느껴 실직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 책임자로 있던 사람들은 사건과 업무의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으로 인해 기관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피해가 발생하자 부담감에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한편 구속자들은 한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가장들인데 이들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가정경제와 양육이 고스란히 부인들의 몫이 되었으나 부인들이 구속자들의 뒷바라지와 가족 대책위원회 활동까지 병행하면서 경제활동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고와 실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질 것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사례1〉

신랑이 받는 것은 월급이죠. 일이 있고 나서 사무실에 가기 민망해요. 맨날 감사가 나오니까요. 판공비 어떻게 썼을까봐. 남편은 걸릴 게 없어요. 몇 달을 회계자료 감사하고 털다털다 나오는 게 없으니깐. 후임 공무원이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중략) ‘(이상호 씨가) 어찌나 일을 잘하셨는지 일하기가 수월하다.’라고 할 정도로.

(윤소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2〉

사건 때문에 억압이 있고, (중략) 제가 책임자인데 그 이후에 관공서에서 억지스럽게 제출하라는 서류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거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단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기도 했죠. (중략) 그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압박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중략) 자활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서류 이런 걸 조사 많이 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없죠. (중략) 제가 지금 대표도 아니고 현직 관장이 아닌데 예전에 거쳐 갔었던 이유만으로 그러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양현/시민단체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3〉

일단 직장은 그만 두었구요. 그만둔 이유는 그날(압수수색 당일) 결근을 했는데, 다음날 회사 쪽에서 쉬어도 된다고 연락이 왔고 사직서는 꼭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별 말 없이 “민정 씨가 이런 일을 할 사람같이 보이진 않았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안 다녔는데 그만두었죠.

(박민정 정당인/ 압수수색 당사자)

〈관련기사²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장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질의를 하는 등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수원시는 2 일 오후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구속 수사와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센터장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중략) 수원시는 시가 이 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28) 〈CBS노컷뉴스〉 2013.09.02, 내란음모 혐의 이상호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계약해지,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603489>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 육성 발전에 사용됐으며 타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 압수수색과 정치공세로 사업 지속 위기

구속자나 압수수색 당사자 중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압수수색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사업체와 단체로 확대되어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책임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개되고 관련 지방정부의 지원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확대 왜곡되면서 정치적 압박이 가해졌다. 실제 사건과 관련 없음이 밝혀졌으나 이런 외부적 영향과 운영자의 구속으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런 경우 사건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고용불안과 경제적 위기에 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례1〉

현재 진행이 중지된 상태고 남편이 구속되기 전까지 조합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는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이사장인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워 결국 폐기되었어요.

(A/구속자 가족)

〈사례2〉

직장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가 크죠. (중략) 직원들은 고용안정을 원하는데, 우리가 재판에서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하면 힘없는 청소업체가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언론에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요. (중략) 다른 준비하던 신규사업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은 있죠. 관공서에서도 저희를 꺼릴 것을 생각하니 시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사회적 기업 관리자/압수수색 당사자)

〈사례3〉

제가 대표로 있으면서 수원시에서 위탁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과다하게 보도를 하고, 대표인 저. 이렇게 두 가지로 내란의 대상자, 각종 비리의 대상자의 대표로 발언하고, 보고했다. 실제로 센터에서 다른 사람을 당원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정당 활동으로 간주하면서 자활기관이라 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까지 취소하게 하려고 한다. 당원인 센터장이 주변 한 두 명에게 했다는 것으로 취소될 사유는 아니다.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윤경선/지역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4〉

어떤 모 대학에 홍보물을 입찰을 해서 일등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위에 보고를 했는데, 어렵겠다”며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혹은 다른 분들도 회사가 실력이 있고 좋은데 (좀 부담스러워서 계약 관계는 못 맺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매출이 줄고 심리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타격과 고통을 받고 있죠.

(박지현/씨앤커뮤니케이션즈/압수수색 당사자)

〈관련기사〉²⁹⁾

해당 지자체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5일 새누리당 소속 수원시의원들은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민한기)’를 구성했다. 의원들은 구속된 이상호 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3일 계약해지), 이** 친환경급식센터장(지난달 29일 자진 사퇴)에 이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철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과 윤경선 수원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의 해고를 촉구했다. (중략)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하남 출신 최철규, 윤태길 의원도 이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은 ‘하남 의제21’ 등 5곳의 단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중략) 한편,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현 진보당 의원)와 정책연대 한 성남시도 경영진 일부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나눔환경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³⁰⁾

경기 수원지역 사회적 기업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이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새날의료생활협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 세운 사회적 기업이다. (중략) 하지만 이사장인 한 전 위원장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3. 직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1) 직장생활, 단체 활동의 부담

국정원이 사건 관련자나 진보당 당원인 사람들의 직장으로 내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어 회사에 해당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거나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들은 사건과 무관하게 자신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부담을 느낀다.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와 정치적 공세는 사회·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사례1〉

우리 당원 중에 한명이 공기업에 다녀요. (중략)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몇일 있다가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를. 그 친구가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를 비롯한 당원들을 조사하려 국정원이 (회사로) 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국정원에서 전화가 진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평범한 당원이에요,

(임미숙/정당인/5월 정세강연 참석자)

〈사례2〉

결론적으로, 내가 단체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돼요. 실은 지금 그만두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내가 어느 단체에 있든 또 나를 걸고 넘어질 텐데. 남편 구속된 후 새누리당이 나를 걸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남편의 부인인 내가 안양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시 늘 푸른 의제'의 의원이에요. (중략)

29) 〈경기일보〉 2014.02.0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418>

30) 〈뉴시스〉 2013.10.03, 내란음모 연루 수원사회적기업 내년 사업신청 포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3_0012406547&cID=10803&pID=10800

요지는 시장이 RO 조직원을 의원에 위촉시켰다는 거예요. (중략) 이 성명서를 보면 나는 이미 RO 조직원이 돼 있고, 나를 뽑은 안양 시장도 종북인 거예요. 이게 다 안 맞는 이야기에요. 자기네도 의제에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박사옥/시민단체 종사자/구속자 가족)

2) 정당활동의 위기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은 사건 이후 진보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정당활동과 정당인으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지역주민들과의 교감과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지자들의 외면과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정당인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치활동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진보당 전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진보당은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진보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사례1〉

의원이니까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심지어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의원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도 있고. 계속 일궈왔던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저를 회피하는 거죠. (중략) 대중들과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의원인데 오히려 대중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심적으로 고통이에요. 당장은 현실적으로 저는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인데, 언제까지 조사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막상 지방선거를 뛰고 있는 저를 소환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중략) 저희는 시민단체보다 당원들, 건강한 당원들이 많이 탈당했죠. 가까웠던 지인들이 같이 있다 보면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 당원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아팠죠. 그 일 터지고 제가 압수수색이 되면서 그간 지지자였던 분들이 등을 돌리거나 탈당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30~40명 정도 무더기로 나가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에는 시민단체하면서 당원활동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단체에서 당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돼서, 부담이 되고. 전에는 저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의제를 만들던 분들도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안소희/정당인/압수수색 당사자)

〈사례 2〉

제가 동네에서 시의원에 출마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중략) 정당과 상관없이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저와 거리를 두고, 당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저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래서 너가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가라. 당적 바꾸라고 하시고, 거리두시고, 짐찜해 하시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 있어요. 지방선거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시기인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가기도 하고, 안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불편한 시선, 이런 저런 이야기에 위축되고 피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출마 관련해서 제가 50표 차이로 떨어져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나도 소극화 되고…

(윤경선/지역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 강연 참석자)

4. 대인관계의 변화

1) 대인관계 위축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변인들의 기피와 경계로 대인관계가 위축되기도 했다. 당사자 스스로도 주변인들이 알아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인관계에 긴장이 형성되고 기피하게 되었다. 대인관계 위축은 자신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축소하게 되어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특히 사회적 낙인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게 되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나타나며 친인척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다.

〈사례1〉

당시에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고 사람들이랑 인사하며 지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에 빠져서 멀리서 제가 오는 것만 보여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중략) 사람들이 “이제 좀 우리 동네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죠. (중략) 그 새누리당 성향의 아주머니는 “이제 이영춘이는 끝났다.” “걔는 곧 구속될 거다.” 등의 얘기를 하고 다니니 깜깜한 거죠…그러면서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동네 사람들을

길 가다 만나도 하시는 말이 “안 잡혀가셨어요?”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영춘/생산직 종사자/압수수색 대상자)

〈사례2〉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건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전화기도 꺼 놓으시고.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친척 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세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친척 분들 만나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으세요.

(A/구속자 가족)

〈사례3〉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 할머니들이 눈을 마주쳐 주지 않는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새누리당 지지성향
분들은 거북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경로당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안 나가고 싶어 하신다. 제가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윤경선/지역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강연 참석자)

2) 타인에 대한 경계와 외부인의 방문에 대한 긴장

압수수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의 방문에 민감해하며 혼자 있을 때는 인기척을 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사회활동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경계심이 있는데 이는 프락치의 경험, 국정원 감시 의심의 결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지속되기 어렵게 되며,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사례1〉

저희 아내가 이제는 인터넷 쇼핑을 안 한다. 왜냐면 남 모를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낮에 집에 있다거나 이럴 때 벨이 울리면, 벨을 누르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반응하지 않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략) 실제로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나오면, 기쁜 마음과 함께,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백현종/종교인/5월 정세 강연 참석자)

〈사례2〉

하루는 둘째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는데 누가 왔는지 잘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뭐 엄마 없으니까, 어른 없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큰 애가 (막내를 방안으로)데리고 들어가고 둘째는 인터폰으로 보고. 이게 뭐 늑대와 아기 돼지삼형제 동화도 아니고. 그리고 확인하고 “누구시냐? 어디서 오셨냐?” 이런 거 꼭꼭 물고. 전에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랬거든요. 애들이 방학해서 집에 있으니까 자장면을 시켜먹거나 그러면 시켜놓으면 제가 가서 돈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는 거죠. 자장면 집에서 와도 문을 안 열어줘 애들이.

(한영/사회복지사/구속자 가족)

〈사례3〉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조심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안타깝다. 저 사람은 괜찮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신입당원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라고 보는 시선.

(윤경선/지역아동센터 대표/5월 정세 강연 참석자)

III. 결론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1. 들어가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시점은 왜 그때여야 했는가?”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 어떤 시기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한 2013년 8월 28일 전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활약³¹⁾

같은 해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오전 8시50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보내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13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심리정보국의 규모와 활동내용,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같은 해 5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사2계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관련 보고 및 결재 서류 등 자료, 이메일 내역 등을 강제로 압수했다. 그리고 검찰은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의 초조함

6월 26일 국정원 직원이 인하대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등 움직임이 많은데 인하대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없느냐”고 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까지 사찰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국정원 댓글녀’라고 불리는 김하영은 7월 4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고소한다. 김씨는 진 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 그 사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킨던 박근혜 대통령은 8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대선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이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지시했다.

31) 시기별 정리는 국정원사건 타임라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http://nis2012.co.kr>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언급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 서달라”고 하며 ‘국정원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신헌법 김기춘의 등장

8월 5일 박근혜 정부의 2기 인선 발표가 있었다. 유신헌법을 작성한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다. 공안검사 출신이며 1993년 대선 당시 초원복국 사건 당사자였던 김기춘의 등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사이 NLL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같은 달 12일 언론은 ‘경기 수서경찰서가 2013년 4월 검찰에 송치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국정원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일반인 이모(42)씨의 계좌에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9234만원이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16일 청문회에서 원세훈과 김용판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부정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6월부터 대선이 국정원이 어떠한 도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다가 8월 25일 경부터는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주어를 바꿔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8월 25일이 취임 6개월이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작심하고 말한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이 잇따랐다.

국정원의 사면초가, 정부의 반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정원은 사면초가에 빠졌고 박근혜 정부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부정이 시작되고 바로 3일 뒤 국정원은 내란음모 사건을 세상에 내 놓았다. 그 이후는 모두 알다시피 급속한 공안정국으로 빠져 들었다. 국정원 발이라고 의심되는 큰 사건이 더 있었다.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검찰 혼들기에 나섰다. 결국 같은 달 27일 채동욱

총장은 “진리와 정의, 반드시 따르는 자 있고 이기는 날 있다”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보훈처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밝혀지고 검찰 특수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작성한 정치와 선거 관련 글 5만 5천여 건을 발견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10월 17일 검찰은 특별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여주지청으로 복귀시켰다. 10월 20일 윤석열 팀장은 국감에서 “법무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위에 적시한 일련의 상황에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 집단을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볼 수 있다. 우리는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건 당시 전후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은 꺼진 불처럼 사그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셀프개혁을 지시한 국정원 개혁조차 공적 의제에서 사라졌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팀 외압을 통해 국정원과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사실상 모두 이룬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왜, 하필 그때였는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2. 결론에 끼워 맞춘 각본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증거들

내란음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의 중요한 증거는 프락치 이모 씨의 증언 및 녹음파일과 기타 압수물이었다.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이 ‘현 정부 전복,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목표로 철저한 사상 무장과 엄격한 위계질서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 또는 중간간부로써 활동했다는 일방적 해석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남아 있지만 재판자료와 인터뷰,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수준에서도 검찰의 내란음모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무죄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유죄의 증거로

심지어 중요한 증인인 프락치 이모 씨의 법정에서 증언은 2010년 진술서 내용과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4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 중 이석기 피고인이 강연한 부분에서 414군데, 841개 단어, 2712개 글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34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내란음모 구성요건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재심에서 무죄가 난 김 전 대통령 사건을 유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면서 강하게 비판³²⁾ 하기도 했다.

사건 초기부터 규정된 RO

이미 국정원이 사건을 터트린 당시부터 당사자들은 ‘RO 조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건은 초기부터 재판까지 오로지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과 내란음모 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내란음모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란음모에 대한 실질적 증거 없이 사건을 짜 맞춘데 따른 무원칙한 수사가 시종일관 진행됐다는 점이다. 결국 무리한 수사는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사상적 의심과 겸열, 그리고 그 사상을 인정하라는 자백 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3. 그에 따른 인권침해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사건 초기부터 무리하게 짜 맞춰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대한 기본권은 쉽게 무시되었다. 혐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내사단계에서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 및 조사과정에서도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까지 무시했다. 심지어 수사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인격권 침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인식공격과 비인도적 태도가 난무했다. 권리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조차 공무집행방해라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피의사실 유포

32) 〈한겨레신문〉 2013.09.06, 무죄 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검찰, 이석기 유죄 논거로 제시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이 유포되었다. 법정에서 다루어지기 전, 피의사실이 거의 날마다 유포되었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제시됐다.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시민사회적 지적이 있었지만 언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언론의 진원지는 국정원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는 외면되고 있었다. 이로써 인권의 기본원칙인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를 추정해야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는 사라졌다.

자백을 종용하며 생각과 사상을 조사

불충분한 증거를 통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피의자들의 생각과 사상을 묻는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5월 정세 강연’에서 나온 발언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 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환자들의 페이스북 등 감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빨리 자백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압수해 간 책에 줄을 쳐 가면서 어떤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사상이다, 이걸 그냥 가지고 있고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당신은 탐독하고 연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거나 민중가요 노래 가사를 들이대며 “이적표현물”을 탐독했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는 생각과 사상을 검증하는 수사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피의자들은 자기 해명과 논쟁을 피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역시 비인간적인 조롱과 모욕의 빌미가 됐다.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통신수단 등에서 사상을 의심할 만한 모든 흔적들을 수집 당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발언들을 잠재적 범죄 혐의로 간주한 것이자, 그 자체로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 하겠다. 또한 압수수색 당사자들과 소환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그동안 미행당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었는데, 수사관들은 심지어 이 같은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며 비아냥대거나 조롱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자들과 가족들은 모든 사적인 발언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등 극심한 자기 견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인의 통신수단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사태라 하겠다. 이러한 사생활 감시는 소환 도중에도 벌어졌고 주변 인물 상대로 내사를 벌이는가 하면 화장실 같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까지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게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하는 몰상식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사건 초기 언론보도에는 국정원이 특정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것은 심각한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중요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역시 감시와 감청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 언론매체를 대동하고 나타나 가족 및 관련자들이 이웃들에게 사건이 공개되는 2차 피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아가 공포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혐의까지 포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무차별 폭로하는 보도를 통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 사진과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사생활 노출은 일상적 삶을 파괴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미래를 위협하게 되었다.

깊은 상흔으로 남은 트라우마

일단 내란음모라는 비현실적 사건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있다. 심지어 사건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이 강사와 다른 동료 학생을 신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러니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 공포는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압수수색 과정, 조사과정,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일방적 매도가 남긴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건 재판이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사생활이 수년 동안 미행과 감시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자신들의 SNS마저 증거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삶 자체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는 트라우마에 갇힌 경우까지 있었다. 프락치로 인한 트라우마 역시 심각한 상황인데, 주변 인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졌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태에 대한 심리적 공포는 생존한다고 할 것이다.

수감자 인권침해

수감자들이 호소한 인권침해는 사건 초기 주로 등장했다. 수감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곳은 망망대해의 고립된 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변호사 접견권을 회피하거나 가족 면회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가족에게 면회를 위한 각서를 강요하고 심지어 미성년인 자녀에게까지 이를 요구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수감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 변론에 임하는 중이었음에도 독방 내에 CCTV(자해 위험이 높은 수감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를 설치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했다.

4. 제언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 자체가 갖는 무게에 짓눌렸다. “아무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숨 쉬는 것조차 범죄가 되었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야기를 듣고 풀어쓰는 우리에게도 전이되었다. 내란음모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의 무게가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지금, 국정원이 쓸고 간 파괴된 삶의 터전과 깨진 인간관계, 사회적인 배제가 모두 고통으로 남았다. 다시금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공안탄압이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것들이 아님을 기록하려고 한다. 공안탄압, 공안정국 등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 뒤에 남는 것은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이다. 상처는 현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녀들을 통해 미래까지 이어진다. 프락치 이모 씨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피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정원이 인권의 보편적 기준과 헌법을 위시한 법률체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등 어디에도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수시로 저질렀음에 주목한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 검찰 공소내용 등을 통해 사건이 치밀하게 기획, 조작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법정에서 사건의 시비가 갈릴 테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도 역사는 이 사건을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희대의 뻥튀기 사건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소위 ‘내란음모’라는 마녀사냥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낳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상처 낸 피해를 복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삶과 존엄을 파괴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인권 탄압의 방편이 사람의 생각, 나아가 정치적 의견의 차이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이다. 우리 모두가 늦지 않은 시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자유와 평등, 연대에 기반 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건강권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정치적 갈등 혹은 폭력과 정신건강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갈등과 폭력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 갈등과 폭력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남김
- 일상적 스트레스(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는 정신 건강에 해로움
 -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무장된 폭력’ 그 자체보다 ‘정치적 갈등’으로 초래된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짐
- 정치적 갈등 자체도 다양한 매개 요인에 의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침
-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수준도 다양한 수준을 가짐

정치적 갈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Mechanism)

- 사회적 신뢰 관계의 파괴, 의심의 증가
- 사회적 차별, 배제, 딱지 붙이기(Stigma)
- 직간접적 폭력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가족 관계, 사회 관계 갈등 및 기능 저하로 인한 2차 피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문제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신체화장애, 우울장애
- 이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가 특히 두드러짐
- 어른보다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악영향이 있음

이른 바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세심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

-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책임 있는 이들의 사과, 책임져야 할 이들에 대한 문책, 처벌이 필요함
- 증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필요
- 개인적 접근보다는 집단적 접근, 의학적 접근보다는 사회심리적 접근이 필요

<참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채정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과 병태 생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004.에서 발췌)

1. 특징적 증상

가. 재경험

- PTSD의 가장 본질적인 양상의 하나로 의식 속으로 반복적으로 침습하는 외상 사건에 대한 두려운 반복 경험의 발생
- 이러한 재경험은 생각으로, 혹은 영상과 같은 지각의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침습은 고통스럽고, 두려움, 분노, 슬픔, 혐오감, 죄책감 등을 가져옴
- 외상 사건을 상기시키는 단서에 접했을 때 침습이 나타나기도 함
- 악몽은 재경험의 흔한 형태

나. 회피 및 감정적 둔화

- 침습적 사고와 이에 따른 각성이 매우 불쾌하므로 환자들은 외상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회피하고자하는 절박한 노력을 함
- 외상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활동, 장소, 사람, 물건 등과 접하는 것을 피함
- 심한 경우는 두려운 것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만 지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피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업무에 매달리기도 함
- 회피가 극심한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기간에 대하여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까지도 있음
- 어떤 기억이 매우 고통스러울 때 이에 대하여 둔감해지려는 시도가 나타남
-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 및 감정 이외에도 전반적인 기억과 감정을 억제하게 됨
- 여행, 여가활동, 취미, 휴식처럼 즐겁고, 유쾌한 활동에 대해서 기분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짐
-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감정의 범위가 좁아지는 소위 정신적 둔마(psychic numbing)나 감정적 마취(emotional anesthesia)가 나타남

다. 과도 각성

- PTSD는 신체적인 각성 상태가 심하며, 자극에 노출된 후 반응성으로 나타나는 각성이 나타남
- 일반적인 각성이 더욱 심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
- 수면장애, 경련, 악몽, 초조, 분노 폭발, 참을성 부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 집중, 기억 곤란. 과도 경계, 과잉 보호 혹은 과잉 통제, 겁에 질림, 사소한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같은 것이 나타남

-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호흡 항진, 머리의 몽롱함, 발한 등의 증상이 평시에 혹은 어떠한 유발인자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음

2.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

- PTSD 환자들은 과도한 각성 때문에 정상적인 각성-수면 유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격적이 되는 수가 많음
- 성적인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하며, 애정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김
- 여러 자극을 구분해내는 신경생물학적 능력에도 손상을 받아, 주의 집중이 어려우며, 해리나 신체화 증상도 나타남
-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대하여 학습된 공포 반응이 나타남
- 대인관계 면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가 깨져 신뢰, 희망의 상실, 사회적 회피, 애착관계에 대한 장애 등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됨
- 이처럼 PTSD는 인간 관계나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감정적 둔마, 내면으로의 침잠, 사람과 사회적 상황의 회피, 적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인관계 장애가 나타남
- 장기 결근, 피로, 집중력 장애 등으로 직업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침

보론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작하여, 주연까지 맡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2013년 8월 27일 새벽 6시30분 국정원 수사관 수십여 명은 이석기 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7명의 진보당 당원들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이 명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은 진보당원들이 참석한 5월 정세 강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과연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프레임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단언컨대, 이 사건은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작하여, 주연까지 맡은 이른바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아래 사건)’으로 부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 글은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싸고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국정원의 존재가 왜 인권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려운지 보여주고자 한다.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비대칭적인 구도’에서 출발했다. 전쟁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국정원이 오랜 시간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적으로 규정한 세력을 기습해서 공격하는 형국이다. 가령, 선전포고와 같은 행위도 없이 국정원은 이른 새벽 기습해서 압수수색과 연행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국정원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떻게 대응하기 어려운, 공포와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도는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이라는 것에서 비롯한다. 비밀정보기관의 특성으로 감시당하는 자는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본인이 감시당하는지 모른 채 수사를 받아야 했다.

국정원, 정보를 쥐고 여론재판을 이끌다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다른 국가기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도자료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도자료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 흔한 언론브리핑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언론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음모와 관련된 보도들은 확인된 과정 없이 쏟아졌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발, 보안당국 발, 검찰 발’ 이런 식으로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은 출처가 모호한 그렇지만 국정원이 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압수수색을 경험했던 증언자들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수많은 언론을 대동하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10곳의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한 언론사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일까?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림이다. 2013년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초기 국정원이 훌린 많은 정보들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했다.

이어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 채 진보당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국정원이 가진 권력의 힘이다. 물론 그 권력은 국정원이 진보당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정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정원,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무력화시켰다

국정원에게 압수수색과 수사를 경험했던 증언자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영장을 형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이라고만 밝힌 채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사례도 있고 설사 밝혔다고 해도 허위일 가능성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품들에 대한 압수를 진행하였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비해 압수된 물품 중 직접적으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 재판에서 다수의 압수물이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국정원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수사는 경찰 수사와 다르다. 장소가 국정원이라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고, 수사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들다. 국정원 수사관은 소환조사 당사자들을 이미 'RO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는 국정원이 'RO 조직원'으로 지목한 인물들과 내란음모 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정원이 'RO 조직원'이라고 선별한 기준은 '5월 정세 강연'에서 조금이라도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 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사 도중 국정원 수사관은 시종일관 소환자들의 페이스북 등 감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으나 빨리 자백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환자들의 묵비권은 형해화되고 수사과정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확인하는 순간 모욕, 공포와 위축감을 느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이대로 둘 수 없다

재판에서 밝혀진 이석기, 이상호 등 7명의 최후 진술에는 공통된 주장이 있다. 이들은 3년 전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원은 ‘확인된’ 3년 전부터 이들을 미행하였다. 이석기, 이상호 등 7명의 입장에서는 감시와 사찰이고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되었지만 국정원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정보 수집’ 행위이다. 재판에서 정당인에 대해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고 증언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원이 취득한 (한국일보 판)‘5월 정세 강연 녹취록’도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이모 씨를 앞세워서 입수한 정보이다. 이모 씨를 앞세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방식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공동체 파괴 행위이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주요 증거물로 삼았던 (한국일보 판)‘5월 정세 강연 녹취록’이 대거 잘못 기록되었고 주요 증인 이모 씨의 진술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모 씨 진술과 이 씨를 통해 받은 녹음 파일 47개와 동영상 3개 이를 옮겼다는 녹취록 41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들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대조한 결과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450곳이나 되었다. 또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원본으로 추정되는 파일은 12개뿐이었다. 재판부는 이모 씨 진술조서 2회 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증거로 총 3,250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전체 증거의 69%에 달하는 2,206개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³³⁾

재판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라는 행위가 진보당 내 당원을 협조자로 삼아 수집한 정보라는 것이 진보당 당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것, 그마저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수라고 보기에 어려운 ‘오도’와 ‘조작’으로 넘쳐났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국정원을 떠올리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전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유훈이 생각난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내란음모 사건을 떠올릴 때 국정원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아는 것이 없고, 이들이 지향하는 양지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국가정보원법 제 3조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안정보 수집 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 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은 잠재적 위험 요소에 기준하여 비밀리에 정보 수집활동을 벌여왔다. 반면 범죄 수사는 엄격한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 활동과 수사·집행 활동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밀 경찰이 왜 인권에 대한 위협인지 알 수 있다³⁴⁾. 국가 안보를 다룬다는 비밀주의 특성상 그 활동방식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결국 국정원이 흘린 정보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에 중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여준다.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권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으로 이뤄졌던 행위들-미행, 감청, 협력자 관리-등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였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르면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은 국정원에게 더 많이 더 넓고 깊게 정보수집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2010년 유엔의 ‘반테러리즘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요청으로 작성한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은 “정보기관의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률로 좁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수임사항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법률 또는 국가안보 정책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당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엄격하게 한정돼야 하며 정보기관이 다룰 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³⁵⁾”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는 비밀 경찰 국정원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보에 관한

33)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총정리』, 2014

34) 장여경,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인권오름〉 365호 203년 10월 10일자

35) 류은숙,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얹힌 실태래, 〈인권오름〉 367호 2013년 10월 30일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수집된 정보들이 어떻게 집적되고 유통되고 관리되는지?

국정원이 정보수집 업무라고 하면서 해왔던 광범위한 사찰은 정권을 비판한 특정 집단들에게만 향한 걸까?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관념은 자유로운 표현 및 활동을 억압하고 민주 사회에 다양한 의견 형성을 가로 막는다. 이 자체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공안기구의 모습이다. 그래서 비밀 경찰 ‘국정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인권유린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불과 사건 발생 3일 전에 법원이 국정원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을 선고했음에도 한국 사회는 국정원에 의해 휘둘려졌다. 비밀 경찰의 정치는 군부독재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게슈타포, CIA, KGB 등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비밀 경찰은 그 사회에 엄청난 인권 침해를 양산했다. 국정원이라는 비밀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 지음, 이주영 옮김, 2005년,『조작된 공포』, 창비

〈참고자료 1〉

내란음모 사건경과

	28일	06:30 국정원, 통합진보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 10명 압수수색 시작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체포
8월	29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한국일보> 인터넷판, 5.12 모임 '녹취록' 공개 (약 20여분 분량)
	30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 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검찰 발송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구속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집행, 수원남부경찰서 이송
	5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9월	6일	국정원, 압수수색 대상자 소환조사 시작 국정원,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수원지검 송치
	9일	국정원, 김미희 의원 RO 국내 총책 지목. 엠네스티, 이석기 의원 사건에 우려 표명
	13일	이석기 의원, 국정원 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
	17일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통합진보당 인사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
	24일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26일	이석기 의원 검찰 기소
	30일	김홍열, 김근래, 조양원 구속
10월	8일	김홍열 등 3인 검찰 송치
	14일	이석기 의원 등 4인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1차) 진행 *2013고합620(2013고합624병합)
	22일	이석기 의원 등 4인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2차) 진행
	24일	김홍열 등 3인 검찰 기소
11월	31일	이석기 의원 등 7일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3차) 진행 *김홍열 등 3인 병합
	5일	박근혜 정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국무회의 가결, 현재에 전달
	12일	내란음모 사건 공판 개시
12월	14일	2차 공판, 국정원-검찰의 대거 압수수색
	22일	22차 공판, 21차로 검찰 측 증인신문 종료하고 변호인단 증인신문 개시
	26일	검찰, 이석기 의원 아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

〈참고자료 2〉

회차별 재판 경과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제공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1차 공판 11월 12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는 없다… 미국의 북 공격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석기 의원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 전면 부인- 이 의원은 “5월12일에 경기도당 임원들의 요청을 받아 강연했으나 미국이 북을 공격할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북이 남침할 경우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는 전제부터 잘 못됐다”고 지적- 이 의원은 “5.12 강연은 정전체제의 위기로 대두된 대전환기에, 진보정당의 역할을 토론한 것이 진실”이라고 밝혀
2차 공판 11월 14일	실종된 녹음 원본파일… 녹취록 증거능력 의문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뿐 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증언,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 해시값(파일의 특성을 요약한 하나의 코드)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사본의 해시값만 있는 상황 드러나
3차 공판 11월 15일	‘결정’ 이 ‘결전’ 으로… 국정원 녹취록 왜곡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원 직원 녹취록 112곳 오기 인정, 녹취록 작성한 문모 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 했다”고 증언-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취록 272곳이 녹음파일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드러나. 5월12일 마리스타 모임 234곳과 5월10일 곤지암 모임 녹취록 38곳. 낱말과 구절, 문단을 수정한 것으로 단어수로 하면 272곳 훨씬 넘어. 기존 녹취록에선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 ‘결정’을 ‘결전’,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 반전평화 ‘선전 호소’를 전쟁에 대한 ‘성전 호소’로 실질적 내란을 준비한 것처럼 자극적인 문구로 바꿨.
4차 공판 11월 18일	모임 사진도 위변조 가능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흥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의 대화 사진 7장 등 RO의 비밀모임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 10장의 위변조 가능성 제기-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속성정보(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5차 공판 11월 19일	<p>RO산악훈련?... “훈련으로 보이지 않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이 이른바 RO 특수경호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인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 씨가 법정에 출석해 훈련이 아니었음 증명. 유모 씨는 “입산 통제 기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산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증언
6차 공판 11월 21일	<p>프락치, 가입시기 · 방식 등 오락가락 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 씨 학모(학습모임)와 이끌(이념서클) 등에서 사상학습을 거쳤고, “추천을 통해 조직원을 만나 ‘수가 누구인가’ 를 묻는 질문에 ‘김일성’이라고 답하는 등의 가입식을 거쳤다”고 증언. 하지만 RO 가입시기와 관련해 “2003년에 가입식을 진행했다” 면서도 “2004년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 - 이모 씨는 또 “RO 조직원들도 운동판에서 이정도의 위치면 조직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석기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된 것도 지난 5월 모임을 통해서” 라며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보안을 중요시여겨 구체적으로 조직 결성시기나 구성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
7차 공판 11월 22일	<p>프락치, 조직 구성 등 추궁에 “추측했을 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 씨 국정원의 진술조서 사전 작성, 몰카 지시 인정 - 이모 씨, RO에 대해 들었다던 채모 씨 지휘성원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추측했을 뿐”이라고 증언. “공부모임을 세포조직활동이라고 진술했는데 추측한 것인가”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 - 이모 씨, 2004년 총선 출마 RO 지시라고 했지만 “지시 · 지침 · 제안인지 파악 못하겠다”며 “채모 씨가 제안해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증언 - RO 가입식 가졌다던 강원도 원주 민박집 기억 못해 - “5.12 모임 주최자가 이석기 의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가”를 물자 “추측”이라고 증언
8차 공판 11월 25일	<p>프락치, 국정원 수사관과 대학 동문, 한 동네 살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락치로 알려진 이모 씨가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직선거리 200m 이내), 문모 수사관이 이모 씨의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 - 이모 씨 증인 채택된 이후에도 문모 수사관 만나 “잘 하라”고 격려받아 - RO 중앙위원회 실제 유무를 묻자 이모 씨는 “왕재산 사건이 터졌을 때, 중앙위원회도 없는 허술한 조직이라는 얘기듣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 - ‘단선연계, 복선포지’ 가 RO의 조직운영 원리라고 진술했지만 변호인단의 신문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며 “이전 영남위 사건이나 민혁당 사건에서 공안기관이 발표했을 때 내가 속한 조직도 이런 원리겠구나 생각했다”고 증언 - 이모 씨 연간총화서 작성한 날 국정원에 증거로 제출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9차 공판 11월 26일	<p>프락치 국정원 수사관 만나, 돈 받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 씨는 2010년 7월 이후 지난 3년 동안 수사기록상으로만 최소 150여 차례 문모 수사관 만났으며 평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난 것으로 확인, 일주일에 한, 두번 당구장 비우면서 아르바이트비, 밥값, 기름값 명목으로 10~20만 원 받았다는 증언 나옴 - 이모 씨 “문모 수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얘기도 얼핏 들었다”고 증언 - 문모 수사관 이모 씨가 운영하는 당구장 찾아 당구대 닦고 명절엔 과일상자까지 전달했으며 이모 씨 문모 수사관 선배라고 호칭
10차 공판 11월 28일	<p>산악훈련? 일반 등산객 같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 관리소 직원 이씨는 ‘경호팀’으로 알려진 CNC직원들에 대한 신문에서 “일반 회사원이라고 생각했다” “대개 과태료 부과하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순순하게 응했다”, 배낭에 대해서도 “일반 등산객 배낭 크기였다”고 증언
11차 공판 11월 29일	<p>휴대폰 통화 많이했다고 RO조직원? 객관적증거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이상호 피고인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로 1200여 차례에 걸쳐 16명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각각의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들로 추정된다는 집행조서를 작성했다”고 증언 -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보안수칙이 철저한 지하조직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 - 문서감정관 윤모씨는 이석기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의 필적감정 결과 이석기의원과 동일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통상 10~20일 걸리는 필적 감정을 4일만에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어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12차 공판 12월 2일	<p>비밀지하조직이 130명 대규모 모임... 이해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남파공작원 김모씨는 “과거 공작원 교육 때 배운 지하당 건설수칙에 비춰보면 RO 조직이 13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모임을 가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 - 8.28 이석기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단은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13차 공판 12월 3일	<p>재판부, 국정원 직원의 주관적인 수사보고서 증거채택 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 대해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 -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는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증언.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고 수사보고에 기록했는데 이는 상임위를 떠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 -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검찰측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함
14차 공판 12월 5일	<p>국정원, 철탑해체 모의실험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1월 26일 국정원은 경기도 하남에서 철탑해체 모의실험을 하였고, 검찰이 이를 증거기록으로 제출 - 변호인이 해당 실험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신문하자 국정원직원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용접기로도 자를 수 있고 나사푸는 것도 있을 것 같았다"고 증언함. 변호인이 "이석기 피고인이 철탑무너트리는 방법 언급한 것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증언 - 검찰은 수원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압수한 랩탑컴퓨터에서 8~90년대 민중가요가 복구되었다며 이를 이적표현물 소지로 이상호 센터장을 기소함. 그러나 이 컴퓨터의 실 사용자가 이상호 센터장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증거서류에서 '이상호'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
15차 공판 12월 6일	<p>소위 폭발물 파일, 열어본 적 없다 / 한전사이트 접속 사실 발견 못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디스크 분석을 수행한 민간은 전문가는 해당파일(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열람 여부의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국정원은 그에 대해서는 분석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 해당 압축 파일은 230개 파일이 들어있으나, 압축해제 이후에 해당 폴더를 열람한 시간은 27초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짐 - 국정원은 RO가 국가주요시설 정보 취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포털검색기록을 제시함. 이는 이상호 센터장의 아내가 보유한 한전 주식시황을 검색했던 것이었음. 재판장의 추궁 끝에 국정원 수사관은 "포털검색까지는 확인했지만, 실제로 한전사이트 접속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
16차 공판 12월 7일	<p>국정원의 위법적 '복호화'로 인해 재판부 '증거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호화과정에는 피고인/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국정원은 한동근 이사장에게서 압수한 암호화 파일을 푸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실무적 어려움'이라고 변명함. 이에 재판부는 관련 증거채택을 보류함 - 정당의 당원명부는 별도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홍순석 부위원장의 항의에도 명부 엑셀파일을 압수함.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관련 법규정을 모른다고 진술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17차 공판 12월 10일	<p>100일 전투, ‘지각하지 말고 업무잘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은 조양원 대표의 USB에서 CNP직원들의 ‘100일 전투’ 관련 문서를 압수하여 전쟁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변호인은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고, 국정원 직원은 “일찍 출근하자는 것과 백일전투 기간만큼은 자신이 맡은 업무 잘 수행하자는...”이라고 증언. 한편, 소위 ‘총화서’가 ‘한반도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18차 공판 12월 12일	<p>김근래 압수물, 소유자 특정할 증거 없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하남평생교육원 3층 옥상방에서 발견한 압수물이 김근래 부위원장의 것이라고 증거 제출함.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원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과거 비상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지만 2월에 사직함.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함. - 국정원이 옥상방 PC에서 발견했다는 이른바 ‘이면합의문’은 서명도 날인도 없는 한글파일에 불과하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음. 재판장은 관련 수사보고서에 대해 증거채택을 보류함
19차 공판 12월 13일	<p>국정원, 입회인 없이 하드 봉인 후 확인서 조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으로 출석한 포렌식 전문가는 마포 오피스텔 압수물인 하드디스크의 9월 23일 봉인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5일에 국정원 수사관의 요구로 9월 23일에 봉인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
20차 공판 12월 16일	<p>‘선거운동 인명부’, 국정원이 ‘RO’자료로 둔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은 통상적인 유권자 DB(주소, 연락처, 직업)인 ‘조직.xls’ 파일(하남평생교육원 압수물)을 ‘RO근거지 확대자료’, ‘전시 상황에 민감한 자료’라고 주장함 -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2012년 8월에 소위 ‘5대 방침’을 내렸고, 이 자료는 그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엑셀파일을 최초로 만든 일자는, 2006,7,8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는 일체의 자료에 대해 증거채택을 보류함
21차 공판 12월 17일	<p>대검, 국과수 녹음파일 해시값 확인없이 감정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과 국과수는 5.12강연을 비롯한 녹음파일에 대한 위조흔적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해시값 확인절차가 부재했음이 밝혀짐. 이와 관련해 국과수 직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해시값 제공 받은 적도 없고, 확인 의뢰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22차 공판 12월 19일	<p>변호인 측 증인신문 시작, 내란음모도 없고 RO도 없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차로 검찰측 증인신문 마무리되고, 22차 공판에서부터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시작됨. 26명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예정 - “당일 행사장 안에 차를 주차시켰다”, “강연 직전에야 핸드폰을 껐다.” 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소위 ‘RO 보안수칙’이 존재하지 않음도 밝혀짐 - 프락치가 ‘김일성 유적답사’라고 주장한 백두산트래킹에 대해서 ‘부인, 고1 아들과 함께 다녀 왔다’는 진술이 나옴. -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씨(목사)는 ‘교회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라는 말을 쓰지만 밖에서 그런말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선전전은 홍보활동, 여론전은 여론환기로 이해해야한다’고 증언함.
23차 공판 12월 20일	<p>물질기술적 준비, 합의된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르게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2모임에 남부, 청년, 북부권역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신문 진행 - 검찰측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진보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도록 실력을 쌓으라는 것’ ‘선전을 하기 위한 재정, 포토샵기술’ ‘운동권용어 중에 하나라 의미있게 듣지 않았다’는고 증언. 이른바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이 밝혀짐
24차 공판 12월 23일	<p>5.12 모임 RO회합이라는 검찰 주장 무너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5.12모임이 당의 공식 모임이 아니라 RO회합이라는 증거로 ‘비밀자금으로 비용처리’ ‘홈페이지에 강연공지 안함’ ‘유령단체로 행사예약’을 내세움. 이에 대해 변호인측 증인은 ‘선관위 등록된 카드로 다과류 구매(영수증 제시)한 점’ ‘당 홈페이지 개설 후 강연회 공지가 한번도 없었던 점’ ‘지난 당사태 이후 당명의로 행사장 대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박함. <p>채모씨, 프락치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락치가 지휘성원으로 지목한 채모씨는 ‘지휘성원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사이이며 면살을 잡힌 적도 있다’고 증언. 또한 ‘03년에 북한산에서 가입식을 했다’는 프락치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허리수술로 인해 등산을 가지 않았다’고 반박. ‘2002년 지방선거 때 수원시의원 출마를 지시했다’는 프락치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청년위원장인 이씨가 스스로 나가고 싶다며 출마한 것”이라고 증언함.
25차 공판 12월 24일	<p>해시값 없으면 위변조 충분히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재판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동일성 여부가 논란의 되자 검찰은 ‘음성파일의 경우 고유한 파형과 주파수가 있어 해시값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옴 -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한양대 김인성교수는 변호인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을 직접 조작하는 시연을 통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함을 증명함.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26차 공판 <small>12월 26일</small>	<p>국정원 주장 ‘행사장소 당일예약’ , 통화기록으로 뒤집어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은 그간 5.10모임과 5.12모임이 비밀회합이기 때문에 당일 예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일 통화기록을 제시한바 있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해당 기간 전체 통화내역을 제시하여 5.10 곤지암예약은 5월 8일에 5.12 마리스타수도원 예약은 5월 11일에 진행했음이 밝혀짐. 검찰은 이미 전체 통화내역을 갖고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짐 - 프락치가 직접 학습시켰고 총화서를 국정원에 넘겼다고 지목된 모 당원의 경우, 해당 총화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털어놓은 고민을 누군가가 정리해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 전 수원시의원 이모씨가 프락치와 함께 조직생활을 했고, 07년에 이모씨가 힘들어 할 때 모 지휘성원이 ‘너에게 부여된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모씨는 ‘완전한 허구다. 그때는 학교급식 직영화, 무상접종 확대 등 시의원 임기 중에 최고의 성과를 남긴 시기’라고 답변 - 이날 검찰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함.
27차 공판 <small>12월 27일</small>	<p>국정원 프락치에게 특수녹음장비 제공 밝혀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제보자로서 협조한 것인가’ 아니면, 프락치가 ‘국정원의 수사도구로 활용되었는가’ 임. - 지난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 문모씨는 “녹음은 프락치가 먼저 자청하여, 해외사이트에서 공금으로 구매해 전달했다”고 주장하였고, 프락치 이모씨는 “국정원 수사관이 녹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하여 진술의 모순이 드러난 바 있음 - 그러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분석관은 ‘해당 장비가 일반 녹음기와 기능이 상당히 다르다’고 증언하고, 변호사도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어디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녹음기가 국정원이 보유한 ‘특수녹음장비’를 제공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사실상 프락치가 ‘국정원의 수사도구’라는 점이 뚜렷해짐.
28차 공판 <small>12월 30일</small>	<p>국방부 ‘청명’ , 예비검속 두려움 실체 드러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측이 5.12모임의 일부 과도한 발언내용을 두고 내란음모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측은 예비검속을 염두에 두고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옴 - 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과정은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전쟁, 5.16쿠데타, 삼선개헌, 10월 유신, 5.18쿠데타, 89년 여소야대 위기’ 등 시기마다 정권이 상시적으로 예비검속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보안해 왔음을 폭로함. - 당시 압수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김수환, 함석헌 등 이른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 1,300여명의 자택구조, 예상도주로, 예상은신처, 구금장소를 정리’ 한 예비검속 계획을 수립했음이 확인 됨. - 이에 변호인단은 5.12 참가자들이 예비검속을 상정하여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역사적 개연성이 충분하고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주장함.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29차 공판 1월 2일	<p>이상호 소장, 평생 미행감시 고통과 싸워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원시의원 K씨는 이상호 소장이 90년대 수기노회 보안수사대 프릭치 공작, 2005년 삼성전자 민주노조 미행감시 사건, 2013년 국정원 불법사찰을 겪으며 평소에도 미행감시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불안해 했다고 증언.- 검찰은 CNP를 RO의 재정, 선전 담당이라고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기획상상 L팀장은 2012년에 이미 '참고인 소환 250명, 협력업체 압색 100여곳, 압색 물품 5000여점, 조사기간 6개월 거치며 외부로 간 자금흐름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RO 재정 운운이 허구인 것은 검찰이 제일 잘 알것라고 주장.
30차 공판 1월 3일	<p>폭동음모 증거라는 다이어리, 알고보니 2008년에 작성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날 폭도음모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증인 신문함. 이를 통해 다이어리에 '이석기 선배님 모친상'을 수사보고서에 '이석기 모친상'으로 바꿔서 기재한 것을 확인함. 이는 RO조직원들이 이석기의원을 '대표님'이라고 부른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삭제한 것이라고 추궁함.- 또한 국정원은 해당 다이어리의 입증취지를 '폭동음모 입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모친상은 2008년인데, 그렇다면 2008년부터 폭동음모를 했다는 것이냐'며 반박- 증거 채택된 녹음파일은 총 47개 중 32개로 약 50시간 분량.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인 '5.10 곤지암 모임'과 '5.12 마리스타 모임'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증거에 포함됨.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의 증인 신문을 마치는대로 오는 7일부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할 예정.- 이날 재판부는 5.10곤지암모임과 5.12마리스타모임의 녹음파일을 포함한 42개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함.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음파일은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진술을 했는지에 관한 것", 즉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겠다고 말함.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31차 공판 1월 6일	<p>후방교란, 현실성 떨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자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씨는 "우리나라 기간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며 "RO 모임에서 나왔다는 기간시설 파괴 등 발언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망상이고 소꿉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증언.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관 보호기능이 너무 중첩되어 있어, (정부의 방호태세를 마비시키려면) 특전사 3개 여단 이상. 각종 무기 및 물자, 수 만명 이상 지원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 - 북한전문가인 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 군사적 위기는 어느 한 쪽의 기획과 도발이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로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관계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 -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결정적 시기에 후방교란을 꾀했다는 공소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자적. 또 "이 의원은 RO 모임에서 미국이 당시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는 정세 강연을 했을 뿐 내란 모의나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날로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 32차 공판부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 																
32차 공판 1월 8일	<p>녹음파일 공개, 검찰 녹취록 450곳 이상 악의적 오녹취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 곤지암 모임과 5.12 마리스타 모임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검찰측 녹취록에 450곳 이상 악의적 오녹취 확인됨 - 이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작성한 수정녹취록을 증거채택함. 검찰은 "오녹취를 정정해준 것은 맞지만 명백히 들리는데도 변호인이 안 들린다고 주장" 한다며 변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a6c9e9;">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검찰의 왜곡 녹취록</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이석기의원 실제 음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이야 전면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은 안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폭력적인 대응</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통일적인 대응</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특히나 남측 정부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있으라고 했는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특히나 남측 정국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 있겠다고 약속했는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고 청구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3보 1배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중앙당 지휘부가 다 없는거에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중앙 당직이 다 없는거에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시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김근래 자네 지금 오나</td> </tr> </tbody> </table>	검찰의 왜곡 녹취록	이석기의원 실제 음성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이야 전면전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은 안된다	폭력적인 대응	통일적인 대응	특히나 남측 정부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있으라고 했는데	특히나 남측 정국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사고 청구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3보 1배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중앙당 지휘부가 다 없는거에요	중앙 당직이 다 없는거에요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시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	김근래 자네 지금 오나
검찰의 왜곡 녹취록	이석기의원 실제 음성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이야 전면전	(북한 핵 보유가 전면화 되면) 전면전은 안된다																
폭력적인 대응	통일적인 대응																
특히나 남측 정부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있으라고 했는데	특히나 남측 정국의 이해를 바람처럼 모여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사고 청구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3보 1배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																
중앙당 지휘부가 다 없는거에요	중앙 당직이 다 없는거에요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시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	김근래 자네 지금 오나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33차 공판 1월 9일	<p>검찰, 20년전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혁명동지가는 이적표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12.6.21에 진행된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지지 결의대회’ 가 ‘RO모임’이며, 참석 당원들을 ‘RO조직원’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날 제창한 ‘혁명동지가’ 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당의 합법적 행사’이며 ‘합창은 들리지만 피고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녹음파일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은 ‘20년전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고, 공안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이라고 반박함. - 변호인단의 반박에 검찰측은 ‘경기도당 행사는 맞지만 특정 계파의 행사’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불렀느냐 안 불렀느냐는 법리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모순적 주장을 함. <p>변호인단, 누더기 녹취록 “당장 공소장부터 재작성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오류로 드러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장 상당 부분이 녹취록 인용이고 녹취록 오류가 드러났으므로 공소장부터 재작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검찰측은 ‘면밀하게 검토하게 기소한 것이고, 공소사실 정리는 무리한 요구’ 라며 반발함. 												
34차 공판 1월 10일	<p>3인 모임, 들어보니 프락치 진술과 상반된 내용 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 재판부는 구속된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과 프락치 이씨의 이른바 ‘3인 모임’에 관한 녹음파일 일부에 대해 증거조사 진행. - 프락치 이씨는 당초 검찰측 증인신문을 통해 ‘3인 모임=RO세포모임’, ‘홍순석=지휘성원’ 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녹음내용에서 상반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프락치 이씨 증언</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녹음파일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화 말투</td><td style="text-align: center;">회합에서 경어사용</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사용</td><td style="text-align: center;">휴대폰 켜 놓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음</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만남 장소</td><td style="text-align: center;">온밀한 장소 물색하여 진행</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해산</td><td style="text-align: center;">헤어질 때는 시간차로 나간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만남 내용</td><td style="text-align: center;">지침 전달하고 임무 보고하고</td></tr> </tbody> </table>	프락치 이씨 증언	녹음파일 내용	대화 말투	회합에서 경어사용	휴대폰 사용	휴대폰 켜 놓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음	만남 장소	온밀한 장소 물색하여 진행	해산	헤어질 때는 시간차로 나간다	만남 내용	지침 전달하고 임무 보고하고
프락치 이씨 증언	녹음파일 내용												
대화 말투	회합에서 경어사용												
휴대폰 사용	휴대폰 켜 놓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음												
만남 장소	온밀한 장소 물색하여 진행												
해산	헤어질 때는 시간차로 나간다												
만남 내용	지침 전달하고 임무 보고하고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내폰→비폰”, 악의적 오녹취 계속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모임의 녹음파일 증거조사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측의 악의적 오녹취 및 의도적 누락이 확인됨. 동문 선후배 간의 신변잡기 등의 자연스러운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하였고, 13.1.9 녹취록은 2시간 50분 중에 의도적으로 1시간 가량을 누락시킨 사실이 변호인의 복원과정에서 확인됨. 																	
35차 공판 1월 13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실제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검찰의 악의적 왜곡</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왜곡 이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민주연합노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민변</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선명히 들림에도 민변이 소위 'RO' 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각 대중기반틀 안에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각 대중기관들 안에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마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이용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내 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폰(비밀폰)</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분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소위 'RO' 보위수칙을 연상시키기 위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계약</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비합</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뚜렷이 들리고, 문맥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단어로 바꿔 RO세포모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td> </tr> </tbody> </table>	실제 내용	검찰의 악의적 왜곡	왜곡 이유	민주연합노조	민변	선명히 들림에도 민변이 소위 'RO' 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각 대중기반틀 안에서	각 대중기관들 안에도	마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이용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내 폰	비폰(비밀폰)	분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소위 'RO' 보위수칙을 연상시키기 위해	계약	비합	뚜렷이 들리고, 문맥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단어로 바꿔 RO세포모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내용	검찰의 악의적 왜곡	왜곡 이유																
민주연합노조	민변	선명히 들림에도 민변이 소위 'RO' 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각 대중기반틀 안에서	각 대중기관들 안에도	마치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이용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내 폰	비폰(비밀폰)	분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소위 'RO' 보위수칙을 연상시키기 위해																
계약	비합	뚜렷이 들리고, 문맥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단어로 바꿔 RO세포모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RO회비로 점심 밥값 계산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홍순석씨가 RO조직의 회비를 걷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녹음파일을 통해 이 돈으로 점심값을 계산했음이 밝혀짐. 비밀조직의 회비로 밥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모순. - 이날 모임에서 프락치 이씨가 북한 원전의 내용을 읽고 와서 암기 수준으로 발제하고, 총화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가져오는 등 증거물 작성 작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드러남.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RO ‘전쟁대비 3대 지침’ , 애초에 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실제 흥순석이 ‘지침이 한 세가지’라고 말하지만, 검찰은 이에 북한과 연계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냄 - 또한 그간 언론에 보도된 ‘동작대표, 광교산 레이더기지, 수원비행장, 전력시설’ 등은 한동근이 한 말이 아니라 프락치 이씨가 했던 말이라는 것이 밝혀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실제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녹취록/공소장 왜곡</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왜곡 이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1) 비상시국회의 같은 연대조직 건설</td> <td style="padding: 2px;">1) 비상시국회의에 연대조직 구성</td> <td style="padding: 2px;">-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합법적 공개단체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삭제</td> </tr> <tr> <td style="padding: 2px;">2) 대중동원</td> <td style="padding: 2px;">2) 대중동원</td> <td style="padding: 2px;">- 전쟁시 집결을 미군기지조사로 왜곡</td> </tr> <tr> <td style="padding: 2px;">3) 전쟁시 집결</td> <td style="padding: 2px;">3) 미군기지 조사</td> <td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프락치 이씨 曰 “비행장, 전력시설..”</td> <td style="padding: 2px;">한동근 曰 “비행장, 전력시설..”</td> <td style="padding: 2px;">프락치 이씨의 발언을 한동근 발언으로 둔갑</td> </tr> </tbody> </table>			실제 내용	녹취록/공소장 왜곡	왜곡 이유	1) 비상시국회의 같은 연대조직 건설	1) 비상시국회의에 연대조직 구성	-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합법적 공개단체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삭제	2) 대중동원	2) 대중동원	- 전쟁시 집결을 미군기지조사로 왜곡	3) 전쟁시 집결	3) 미군기지 조사		프락치 이씨 曰 “비행장, 전력시설..”	한동근 曰 “비행장, 전력시설..”	프락치 이씨의 발언을 한동근 발언으로 둔갑												
실제 내용	녹취록/공소장 왜곡	왜곡 이유																												
1) 비상시국회의 같은 연대조직 건설	1) 비상시국회의에 연대조직 구성	-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합법적 공개단체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삭제																												
2) 대중동원	2) 대중동원	- 전쟁시 집결을 미군기지조사로 왜곡																												
3) 전쟁시 집결	3) 미군기지 조사																													
프락치 이씨 曰 “비행장, 전력시설..”	한동근 曰 “비행장, 전력시설..”	프락치 이씨의 발언을 한동근 발언으로 둔갑																												
36차 공판 <small>1월 14일</small>	말 바뀐 프락치 초기 진술조서 증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락치 이씨가 국정원과 최초 접촉한 것은 2010년 7월 경인데, 검찰과 국정원은 2013년 진술조서만 증거로 제출하여 초기진술조서를 숨겨왔음. 증인신문과정에서 초기진술조서의 존재가 밝혀지자 1달가량 시간 지체 후 ‘참고자료’로 제출. -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며 윤색, 가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초기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검찰진술조서/법정진술</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초기 진술조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조직명</td> <td style="padding: 2px;">RO</td> <td style="padding: 2px;">내일회(산악회)</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가입의식</td> <td style="padding: 2px;">채00과 했다</td> <td style="padding: 2px;">언급 없음</td> </tr> <tr> <td style="padding: 2px;">강령</td> <td style="padding: 2px;">3대 강령</td> <td style="padding: 2px;">“강령은 없다”</td> </tr> <tr> <td style="padding: 2px;">회비</td> <td style="padding: 2px;">십일조</td> <td style="padding: 2px;">언급 없음</td> </tr> <tr> <td style="padding: 2px;">‘남철민’</td> <td style="padding: 2px;">“조직명이다”</td> <td style="padding: 2px;">“당호(조선노동당 부여”</td> </tr> <tr> <td style="padding: 2px;">총책</td> <td style="padding: 2px;">이석기 의원</td> <td style="padding: 2px;">이00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td> </tr> <tr> <td style="padding: 2px;">제보동기</td> <td style="padding: 2px;">천안함, 연평도</td> <td style="padding: 2px;">3대 세습</td> </tr> <tr> <td style="padding: 2px;">제보경위</td> <td style="padding: 2px;">국정원 홈페이지</td> <td style="padding: 2px;">언급 없음</td> </tr> </tbody> </table>			내 용	검찰진술조서/법정진술	초기 진술조서	조직명	RO	내일회(산악회)	가입의식	채00과 했다	언급 없음	강령	3대 강령	“강령은 없다”	회비	십일조	언급 없음	‘남철민’	“조직명이다”	“당호(조선노동당 부여”	총책	이석기 의원	이00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제보동기	천안함, 연평도	3대 세습	제보경위	국정원 홈페이지	언급 없음
내 용	검찰진술조서/법정진술	초기 진술조서																												
조직명	RO	내일회(산악회)																												
가입의식	채00과 했다	언급 없음																												
강령	3대 강령	“강령은 없다”																												
회비	십일조	언급 없음																												
‘남철민’	“조직명이다”	“당호(조선노동당 부여”																												
총책	이석기 의원	이00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제보동기	천안함, 연평도	3대 세습																												
제보경위	국정원 홈페이지	언급 없음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37차 공판 1월 16일	<p>재판부, 프락치 진술조서 증거 불채택 ‘사실상 조작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부는 채택이 보류된 증거들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프락치 이씨의 국정원 진술조서 2회분에 대해 불채택함 - 해당 진술조서는 각각 4시간 10분, 그리고 1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듣고 문답식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조서에 기재된 소요시간은 각각 3시간, 4시간에 불과함. 이에 재판부는 ‘호텔방에서, 녹화자료도 없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조사’ 라며 불채택을 결정함. - 이는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듯이, 국정원이 작성해놓은 조서에 프락치가 서명, 날인만 했다는 것이 사실상 인정된 것이며, 국정원이 조작된 허위문서로 사법부를 기망했음이 밝혀진 것임 <p>RO모임이라던 5.12강연, 경기도당 행사임이 밝혀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5.12마리스타수도원 행사를 RO모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청취한 3인모임 청취과정에서 경기도당 행사였음이 밝혀짐 - 녹음파일에서 홍순석씨는 “이렇게 봐서, 아닌 사람은 안 모일거라고” 라며 행사를 설명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각자 판단해서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올 것이라는 취지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RO모임이라면 불가능한 발언임. 또한, “도 차원에서”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날 행사가 경기도당 차원의 행사임이 드러남. - 게다가 이상의 대화내용이 분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녹취록에서 누락하였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실제 들어보니</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검찰 녹취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이렇게 봐서, 아닌 사람은 안 모일거라고” “도 차원에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부 누락</td> </tr> </tbody> </table>	실제 들어보니	검찰 녹취록	“이렇게 봐서, 아닌 사람은 안 모일거라고” “도 차원에서”	전부 누락
실제 들어보니	검찰 녹취록				
“이렇게 봐서, 아닌 사람은 안 모일거라고” “도 차원에서”	전부 누락				
38차 공판 1월 17일	<p>공작금이라던 1억 4천만원, 증거불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측은 사건 발생 초반 이석기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1억 4천여만원이 RO의 자금이라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이 RO자금이라는 검찰 입증취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다” 며 증거불채택 결정을 내림. <p>3인 만남, 내란 결의했다는 5.12모임 이후에도 후속조치 없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측이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하는 5.12모임 이후에 진행된 3인 만남의 녹음파일 어디에서도 내란 모의를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짐 - 이에 대해 검찰측은 ‘정세의 변화 때문에 결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3인 만남에서 ‘결행 연기’ 논의조차 되지 않음. 이에 변호인단은 “애초에 내란음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39차 공판 1월 20일	<p>영진위 추천 북한영화, 통일부 상영 북한영화, 모두 이적표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 재판부는 문서형태의 일반증거물과 26편의 북한영화로 이뤄진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함. - 이날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을 시청한 뒤, 검찰측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200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홍길동' '임꺽정' 등과 함께 북한영화 50선에 선정하면서 권장한 영화" 라며 "유신체제 등 남한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북한체제나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현재 통일부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영중인 영화'라고 주장함. - 기타 이적표현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압수물들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석기 피고인의 이적 표현물들은 소지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됐고 소지에 대한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던 것들"이라고 반박함. - 재판부는 21일과 23일 남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4일과 27일, 28일 사흘에 걸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함. 또한, 2월 3일 결심공판 예정.
40차 공판 1월 21일	<p>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 총 3,250개 중에서 2/3이상 철회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로 총 3,250개(내란음모, 내란선동죄 기준, 약 15,000여 쪽 분량)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전체 증거의 69%에 달하는 2,206개의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음. - 증거조사 절차 종결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상태임 - 이에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별로 많지 않다"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문함. <p>**전체 신청 증거(3,250)=채택(890)+불채택(116)+철회(38)+입증절차 미진행 (2,206)</p>
41차 공판 1월 23일	<p>검찰측 증거조사 종료, "내일, 변호인측 탄핵증거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물을 끝으로, 입증계획 제출된 검찰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 됨 - 검찰은 입증계획 제출하지 않은 모든 증거(검찰 신문조서 제외)를 철회하였으며, 재판부는 검찰 신문조서를 불채택함. - 한편, 변호인은 검찰측 증거에 대한 탄핵증거 200여개 이상을 내일 오전에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변호인단의 탄핵증거물은 대표적으로 곤지암수련원 인근에서 다과를 구입한 경기도당의 카드영수증(5.10곤지암행사가 경기도당 행사임을 입증), 이석기 의원에 대한 테러위협 동영상(구체적 신변 위협 입증), 한동근 이사장의 롯데백화점 영수증(한국정보화진흥원을 탐문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등임. -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측 증거채택은 검사의 동의가 필요 없음.

공판	공판날짜별 재판 핵심내용
42차 공판 1월 24일	<p>이상호. 예비검속에 대한 실체적 두려움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호 센터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 해고 노동자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에, 미행사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음을 진술함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p>홍순석. 각자 사정으로 7번이나 약속을 변경한 모임이 RO세포모임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순석 부위원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반전평화 활동과 관련한 진보연대 차원의 지침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밝힘. - 또한, 3인 만남과 관련하여 7번이나 약속을 변경하고 전화통화로 약속을 잡는 만남을 'RO세포 모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p>한동근. 북한원전 USB를 준 것도, 마리스타 장소를 알려준 것도 프락치 이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동근 이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을 내란죄와 국보법위반으로 만든 것은 26년지기 친구인 프락치 이씨라고 진술함. 북한원전 USB를 자신에게 준 것도 이씨이며, 5.12모임 장소인 마리스타 수도원을 알려준 것 도 프락치 이씨였음을 진술.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43차 공판 1월 27 일	<p>이석기 의원, 검찰신문 불응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의 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석기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의 날조'이며 '전쟁을 막자는 강연을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함. 또한 CNP를 통해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에 기여하고자 했음을 진술함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44차 공판 1월 28 일	<p>조양원. ‘적’ 이란 표현이 내란의 증거? 안철수도 쓰는 단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양원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데 대해, "얼마전 안철수도 인터뷰에서 '적들'이라고 했다"며 반박함.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p>김홍렬. 사제폭탄 제조법? ‘돈안드는 건강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홍렬 위원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전쟁위기가 한풀 꺾였어도 반전평화 운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5.12강연을 준비했다고 주장함. 또한 검찰이 사제폭탄 제조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13년 2월경 유료 P2P사이트에서 건강관련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한 것"이며 당시에 열어본 파일도 "돈 안드는 건강법, 프로이드의 성심리학 정도였다"고 반박함.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p>김근래. 지휘원? 평생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근래 부위원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 쟁점중에 하나인 '김근래 지휘원/지금오나'에 대해, 50여시간에 달하는 녹음파일 다른 곳 어디에도 없고 프락치 이씨조차 증인신문에서 "김근래 지금와?로 들리 수 있겠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함. (*구체적 내용은 최후변론 참고)

〈참고자료 3〉

저는 김근래씨의 아들 김동주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등산도 많이 다녔으며 아버지의 고향에도 별로하려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행복했고 그외에 가족들이랑 다같이 있을 때 분위기도 좋고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구속되시고 나서부터 집안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고 행복지수도 많이 떨어졌으며 학교나 다른곳에서 아
버기 때문 얘기할 나오면 불안하고 혹시 아버지 이동이
나올까봐 많이 긴장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3형제
때문에 집과 생계비가 많이 드는게 어머니 혼자 부당하기도
한게 있고 특히 악내는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어서
할머니가 오셔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도
움이 늦어지면서 악내동생도 늦게 잠들게 되고 그러면서니
할머니도 많이 피곤해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집에 안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석방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라는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는게 많이 힘들고 이런 아버지를 집에서 보고 싶습니다

김동주

구속자 김근래씨 고등학생 아들 동주가 아빠에게 쓴 편지

이 보고회는 (재)인권재단사람과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후원자들은 <http://socialfunch.org/hrvoice>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